

# 대학안전관리계획



2024. 2.

광주여자대학교

# 목 차

<b>I. 대학안전관리계획 개요</b> .....	<b>1</b>
1. 목표 및 기본방향 .....	1
2. 안전관리조직의 구성 및 운영 .....	2
<b>II. 위험요인별 예방활동 및 위험 발생 후 사후조치</b> .....	<b>5</b>
1. 재난 .....	5
① 자연재난 .....	5
② 사회재난 .....	9
2. 안전사고 .....	10
① 대학 안전사고 .....	10
② 교육시설 안전사고 .....	14
③ 연구실사고 .....	15
3. 감염병 확산 .....	18
① 코로나-19 .....	18
4. 범죄 .....	20
① 일반범죄 .....	20
② 성범죄 .....	24
5. 산업재해 및 중대재해 .....	25
① 산업재해 .....	25
② 중대재해 .....	29
6. 기타 .....	32
① 비상사태(전시, 침투·도발 등) .....	32

# 목 차

III. 안전사고 피해자 보상 및 지원 .....	33
IV. 안전인식 제고 및 안전문화 확산을 위한 안전교육 .....	36
V. 각종 위험 예방을 위한 교내·외 협력체계 구축 .....	45
VI. 그 밖에 안전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	47
※ [붙임1] 위험요인별 담당부서 및 담당자 현황(총괄) .....	48
[붙임2] 관련규정 .....	50

# 대학안전관리계획 개요

## 1. 목표 및 기본방향

**비전**

모두를 위한 안전한 대학생활 구현

**목표**

더 안전한 교육환경 조성 및 안전문화 확산

### 추진과제

1

#### 위험에 대한 예방활동 및 위험 발생 후 사후조치

- 위험별 대응매뉴얼과 안전조치
- 위험별 피해현황과 예방 및 대응 조치 계획

2

#### 안전사고 피해자 보상 및 지원

- 대학안전사고 피해 보상을 위한 보험(공제) 가입
- 연구실사고 피해 보상을 위한 보험(공제) 가입

3

#### 안전인식 제고 및 안전문화 확산을 위한 안전교육

- 법령에 규정된 안전교육의 충실한 이수를 통한 안전문화 확산
- 정기적인 재난대비훈련

4

#### 각종 위험 예방을 위한 교내·외 협력체계 구축

- 대학 캠퍼스 지원기관 협의체 구성 및 운영
- 관계기관과의 협업을 통한 안전문화 확산

### □ 목적

- 교육기관의 안전보건 목표와 경영 방침 설정
- 안전관리계획의 수립·이행으로 재난예방을 위한 유해위험요인 점검·개선 업무처리 절차마련과 재난 발생 시 긴급구조, 조속한 복구 등 수습능력 제고
- 재난 및 안전관리 시스템의 구축·운영에 필요한 안전 및 보건에 관한 인력, 시설, 장비 등 관련 예산 편성과 전담 조직 구성·운영

### □ 방침

- 대학 안전보건 경영 방침 설정을 최우선 의무 이행사항으로 규정
- 재난사고, 안전사고, 산업재해는 총괄부서에서 중점관리
- 사고 발생 시 부서 간 협업을 통한 위기관리 및 지역사회와의 협력 네트워크 구축
- 교육훈련을 통한 위기대응 능력 강화로 유사시 신속 보고체계 이용 및 유관기관의 비상연락망 활용

## 2. 안전관리조직의 구성 및 운영

### ① 학교 현황

#### □ 일반현황

학교명	광주여자대학교	설립 구분	사립
주 소	광주광역시 광산구 광주여대길 40		
전 화	062-950-3515	FAX	062-950-3917
		홈페이지	www.kwu.ac.kr
총장	이선재	총괄안전관리 책임자(관)	손명동(행정처장)

#### □ 교직원 및 학생 현황

학부생	대학원생	교직원	합계
3161	219	216	3,596

#### □ 학교 위치 및 비상대피도



## ② 조직체계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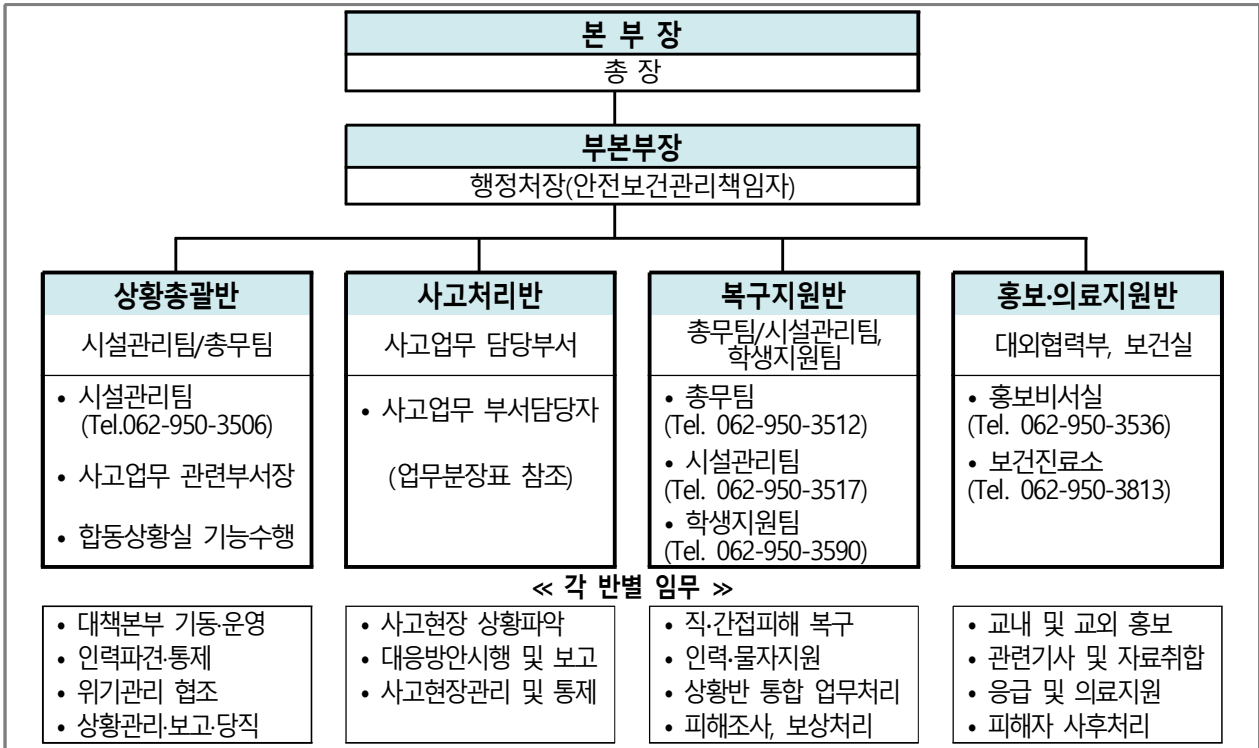
### □ 담당부서 현황

구분	위험유형	주관부서	협조·지원부서
총괄	대학안전관리계획 수립 및 시행	시설관리팀	총무팀
1. 재난	자연재난	시설관리팀	총무팀
	사회재난	시설관리팀	총무팀
2. 안전사고	대학안전사고	학생지원팀	시설관리팀, 국제교육원
	교육시설 안전사고	시설관리팀	총무팀
	연구실 사고	시설관리팀	학사운영팀
3. 감염병	코로나 19	학생지원팀	기획전략팀, 학사운영팀, 총무팀, 국제교육원, 시설관리팀
4. 범죄	일반범죄	총무팀	학생지원팀
	성범죄, 학교폭력	양성평등센터	총무팀
5. 산업재해	산업안전보건법	총무팀	시설관리팀
	중대재해처벌법	총무팀	시설관리팀
6. 기타	비상사태	총무팀	시설관리팀
	사이버 안전관리	정보기술팀	총무팀

### □ 비상 연락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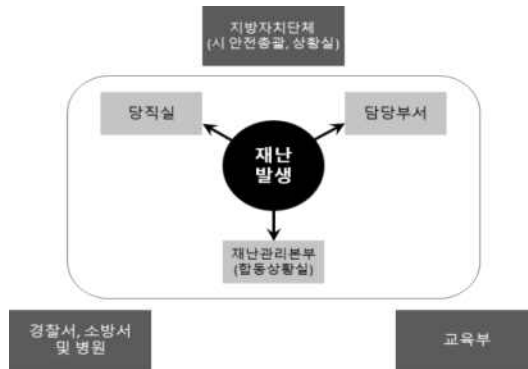
부서명	직 책	성 명	연 락 처
총장실	총장	이선재	062-950-3600
행정처	처장	손명동	062-950-3511
교무처	처장	정성일	062-950-3525
학생처	처장	이진희	062-950-3610
기획처	처장	윤현석	062-950-3532
대학원	원장	도은영	062-950-3800
산학협력단	단장	박득	062-950-3580

## 재난안전관리체계



## 비상연락망 구축사례

### ○ 대학 내·외부 재난 상황 전달 체계



### ○ 재난 심각단계 이전



### ○ 재난 심각단계



## 1. 재난

###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제5조(국민의 책무)** 국민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재난 및 안전관리업무를 수행할 때 최대한 협조하여야 하고, 자기가 소유하거나 사용하는 건물·시설 등으로부터 재난이나 그 밖의 각종 사고가 발생하지 아니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1 자연재난

#### <담당부서 및 담당자>

구 분	담당 부서	직책	성 명	연락처	비고
팀장	시설관리팀, 총무팀	팀장	강경준	062-950-3506, kjkang@kwu.ac.kr	주관부서
팀원	시설관리팀	팀원	김중화	062-950-3517, kinnal@kwu.ac.kr	
팀원	"	팀원	최영석	062-950-3515, yeongs.choi@kwu.ac.kr	
팀원	총무팀	팀원	김호연	062-950-3512, hoykim@kwu.ac.kr	협조부서

### □ 재난유형별 위험요인

- **(태풍)** 열대저기압 중심부의 최대풍속이 17m/s 이상으로 발달하여 태풍으로 명명된 것
  - 태풍이 발생되면 풍랑, 해일, 호우, 강풍으로 인하여 홍수, 산사태, 대규모 정전 등으로 인한 대학 시설물 및 학생 피해, 학생수업 결손 등의 인적·물적 피해 발생
- **(호우)** 일반적으로 짧은 시간에 많은 양의 비가 내리는 것을 지칭
  - 국지성 집중호우와 게릴라성 집중호우로 산사태, 대학 시설물 붕괴·매몰 위험 및 운동장, 강의실 침수 등의 피해 발생
- **(대설)** 일정 시간에 강설이 집중적으로 발생하여 인명 및 재산 피해를 유발하는 재해
  - 도심 내 주요 간선도로 및 시 외곽 도로의 통행이 불가하고 고립지역이 발생함에 따라 학생들이 등교에 차질을 빚으며 학생수업 결손 초래
- **(지진)** 지구내부에서 장시간 축적된 에너지가 순간 방출되면서 그 에너지의 일부가 지진파의 형태로 사방으로 전파되어 지표면에 지반이 흔들리는 자연현상
  - 지진 발생으로 인명 피해, 전력공급의 차질과 방송통신 시설에 피해 발생 및 라이프라인(life-line) 손상에 따른 수도물 및 가스공급 중단

## □ 예방·대응 및 재발방지 대책

- (예방·대비) 학생 및 교직원 재난안전교육을 통한 재난 대응역량 강화
- (대응·조치) 재난 관련 신속한 상황전파 및 보고체계 확립, 안전한 학사 운영을 위한 긴급대책 및 휴업 등 학사 운영조정 안내
- (수습·복구) 학사 운영 결손을 최소화하여 학생의 수업권 확보, 시설·심리·학업지원 관련 등 다양한 분야의 복구계획 시행

### 《 [재난공통] 재난 예방·대응 및 재발방지 대책 》

#### ① 예방·대비 단계 추진계획

##### ○ 예방교육

- 자연재난 대응 현장조치 매뉴얼 및 지침에 따른 재해취약시설별 안전사고 예방 교육을 통한 학생 및 교직원의 안전의식 고취
- 학생, 교직원 대상으로 자연재난 사고 예방 관련 교육 수행

##### ○ 홍보활동

- 자연재난 안전문화 확산을 위한 캠퍼스 내 재난유형별 예방 활동 동아리 운영, 포스터 공모전 등 홍보활동

##### ○ 재난대응훈련

- 재난유형별 교육·훈련 매뉴얼을 기반으로 한 재난대응훈련 실시
- 관계 부처 및 지자체 간 협업을 통한 대학 구성원 대상의 정기적인 대피훈련 실시

#### ② 대응·조치 단계 추진계획

##### ○ 재난안전관리체계 구축

- 재난사고 대비·대응 체계(상황 관리체계) 구축·운영을 통한 단계별 재난 상황 판단(관심-주의-경계-심각) 및 재난단계별 보고·전파
- 재난 발생 시 단계별 담당 부서 및 실무자(정부) 지정 관리

##### ○ 재난단계별 매뉴얼 운용·대응

- **1단계** 관심, 주의단계

- 캠퍼스 내부 담당부서 상황모니터 및 재난 상황별 매뉴얼에 따른 대응
- 비상연락망 점검, 당직실, 담당부서 순찰 등 수행

- **2단계** **경계단계**

- 캠퍼스 내부 담당부서 비상근무 체제 돌입
- 상황모니터 및 재난 상황별 매뉴얼에 의거하여 대응
- 취약 및 위험 요소에 대한 대응 조치 / 부서별 협의(긴급 대피, 홍보 등)
- 교내 재난관리담당부서와 연락망 유지를 통한 재해 상황의 신속한 파악 및 대처
- 경찰서, 소방서 등 유관 기관 협조 요청

- **3단계** **심각단계**

- 상황모니터 및 재난 상황별 매뉴얼에 의거하여 대응
- 재난관리본부 구성 및 재난상황실 운영
- 필요 시 교내 전체 부서 인력을 활용하여 업무지원
- 교육부 및 시 재난대책본부, 유관기관 협의

○ **재난상황보고·전파 및 지역사회 협력체계 구성·운영**

- 재난사고 보고체계 일원화 및 신속 보고·전파 체계 가동

- 교육부 안전 대표 메일(moe119@moe.go.kr)을 통해 안전사고 발생시, 24시간 일관성 있는 보고체계 유지
- 교육부 안전대표 메일로 보고 후 유선연락
- 교육부 상황보고 및 기초자치단체 (시·군·구)에도 재난상황 통보

- 중대 재난발생 시 교직원, 학생, 방문객 등에게 사고 상황 및 대피로 등을 전파
- 대학교 캠퍼스 내·외 안전관리 지원을 위해 구축된 재난안전관리 주관·유관기관과의 상호 협력 네트워크 활용 및 기관별 보유 자원(캠퍼스 시설 등) 공유 및 관련 내용 제공

③ **수습·복구 단계 추진계획**

○ **피해조사**

- 피해상황 조사 및 조사표 작성
- 재난피해 조사서 대장 작성
- 피해복구계획(안)과 인적·물적 피해 및 복구내역 조사

○ **피해 복구 우선순위 설정**

- 피해 조사표 및 조사서 대장을 통한 피해 복구 우선순위 설정
- 피해복구계획(안)에 포함시켜 복구계획 수행에 반영

○ **사상자 대책**

- **부상자 치료대책**

- 보건진료소 피해자 응급조치
- 신속히 근거리 병·의원으로 후송
- 중상자의 경우 최대한 가까운 거리의 종합 병원급 의료시설로 후송

- 사망자 대책

- 사망진단을 위한 병원 후송
- 사망자 신원 파악 후 유가족에게 즉각 연락

- 구호활동

- 교통이 편리한 곳에 구호센터 설치·운영
- 상황에 따라 군부대 또는 시·군 의료구호반 파견 요청
- 의료활동 외에 상담센터, 대피소 등 구호활동 실시

○ 현장복구

- 재난복구는 자력복구를 원칙으로 하되, 필요시 지역주민 및 민·관·군의 협조로 복구
- 대학 구성원 및 외부인들이 이용하는 공공시설은 원상복구\*를 원칙으로 하되, 피해재발이 우려되거나 개량 계획이 있는 구조물은 예산 허용범위 내 개량복구\*\*

\* (원상복구) 재난발생으로 기존 시설이 파손되어 기존 시설과 유사하게 복구

\*\* (개량복구) 재난발생으로 기존 시설 파손 시 재발 방지를 위해 시설의 기능을 크게 개선하여 복구

○ 재난 모니터링 및 평가

- 중대 안전 사고의 전 과정에 대한 실행 측면과 조직 복원성 수준 측면 모두에서 개선사항 파악
- 도출된 개선사항은 '대학 안전관리계획'에 반영하여 보완·추진

[재난대응·복구 체계·절차]



## 2 사회재난

### <담당부서 및 담당자>

구 분	담당 부서	직책	성 명	연락처	비고
팀장	시설관리팀, 총무팀	팀장	강경준	062-950-3506, kjkang@kwu.ac.kr	주관부서
팀원	시설관리팀	팀원	김중화	062-950-3517, kinnal@kwu.ac.kr	
팀원	"	팀원	최영석	062-950-3515, yeongs.choi@kwu.ac.kr	
팀원	총무팀	팀원	김호연	062-950-3512 hoykim@kwu.ac.kr	협조부서

### □ 재난유형별 위험요인

- **(화재·폭발)** 사람의 의도에 반하거나 고의에 의해 발생하는 연소 현상으로서 소화 시설 등을 사용하여 소화할 필요가 있거나 또는 화학적인 폭발현상
  - 방화, 실화, 테러 등에 의한 (대형)화재 및 자연발화, 천재지변에 의한 발화, 기타 폭발, 관리부실 등 부주의에 의한 (대형)화재로 인한 대인·대물 피해발생
- **(건물붕괴)** 학생, 교직원이 이용하는 시설물(체육관, 강의동, 기숙사 등) 등의 붕괴나 파괴 등으로 인한 사고로 인명 및 재산피해를 유발하는 재난
  - 구조적 결함, 부실시공, 노후화, 관리부실 등에 의한 건축물 붕괴 발생 및 건설 공사 현장에서 건축 중인 건축물의 붕괴로 인한 대규모 인적사고 초래

### □ 예방·대응 및 재발방지 대책

- **(화재·폭발)** 불법·위험 전열기구 이용실태 점검, 소화기·소화전 등 소방기구·시설 설치·작동 상태 점검·관리, 화재경보 비상벨, 대피로 등 피난시설 이용·행동요령 숙지
- **(건물붕괴)** 일상·정기점검, 정밀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등 안전점검을 실시하고, 재난발생에 대비한 보고체계 구축 및 유관기관 합동조사 체계 확립

## 2. 안전사고

### ① 대학 안전사고

#### 고등교육법

제27조의2(안전관리계획의 수립·시행) ① 학교의 장은 학교에서 발생하는 재난, 안전사고, 감염병의 확산, 범죄 등 각종 위험으로부터 학생, 교직원 등 학교의 구성원을 안전하게 보호하기 위하여 안전관리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 <담당부서 및 담당자>

구분	담당 부서	직책	성명	연락처	비고
주무팀장	학생지원팀	주무팀장	노상석	062-950-3611, ssno@kwu.ac.kr	주관부서
팀원	"	팀원	김종성	062-950-3590, jskim@kwu.ac.kr	
팀원	"	팀원	문예선	062-950-3813, azsx8465@kwu.ac.kr	
팀장	시설관리팀	팀장	강경준	062-950-3506, kjkang@kwu.ac.kr	협조부서
팀원	"	팀원	최영석	062-950-3515, yeongs.choi@kwu.ac.kr	
팀원	"	팀원	오세희	062-950-3950, osh0408@kwu.ac.kr	
팀장	국제교육원	팀장	김현석	062-950-3574, hsk119@kwu.ac.kr	

#### □ 위험요인

- (학교안전사고) 수업, 실습, 집단연수 등 교육활동 중에 발생한 사고로서 학생·교직원 또는 교육활동참여자의 생명 또는 신체에 피해를 주는 모든 사고
  - 교육활동 중 낙상사고, 비래·전도, 충돌·협착, 화상, 교통사고 등의 학교안전사고의 발생으로 신체 장애, 정신적 피해 발생 및 학습 결손 초래

#### □ 예방·대응 및 재발방지 대책

##### ① 예방·대비 단계 추진계획(사고유형별 예방·관리)

##### ○ 교내 교통안전

- 보행자의 안전성과 보행흐름을 고려한 교통안전기준에 따라, 안전점검, 유지관리

- 보행자·차량이 함께 이용하는 도로에는 보행자 안전을 위한 충분한 보차도 분리시설 마련
- 교내도로에는 차량과 보행자의 안전을 위한 적절한 바닥표시와 안내판의 설치·관리
- 교내도로는 비상 시 비상차량의 신속한 통행이 언제나 가능하도록 유지·관리
- 교내도로에는 충분한 밝기의 조명을 설치·관리
- 교내 개인형이동장치, 오토바이, 자전거 이용 수칙 마련·시행

## ○ 행사 안전

- 행사 안전기준을 적용한 안전사고 예방 및 안전관리 실행

- 입학식, 졸업식 등 매년 정기적으로 개최되는 100명 이상의 대규모 행사는 참가자들의 신변안전을 위해 위험요인 사전점검
- 행사승인 부서는 행사 관련 정보, 위험성 관리방안, 안전점검사항, 행사 예상 참가 인원, 행사 관련 계약업체, 보험가입여부 등 행사에 대해 종합적으로 점검·확인 후 승인
- 비상 시 신속한 대피·응급처치를 위해 행사장과 가장 가까운 비상탈출구, 화재경보기를 확인하고, 비상 집합장소 지정, 신속한 사고신고·보고 방법 등을 포함한 비상 절차 마련

## ○ 학생 집단활동 안전

- 참가 학생 집단활동의 형태, 참가자, 규모, 지역, 활동(프로그램)에 따른 위험 정도를 고려한 안전기준에 따라, 안전사고 예방 및 안전관리 실행

- 학생집단연수에 관한 계획의 수립 및 승인
- 학생집단연수 참가자에 대한 사전안전교육
- 사고 및 위기 발생 시의 대응계획
- 보험가입 여부 확인
- 비상 연락 체계와 방법
- 학생집단연수에 대한 감독 활동
- 참가자의 건강과 의료에 관한 사항
- 숙박 및 식사 안전

## ○ 생활 안전

- 학생, 교직원, 방문객 등 등 교내 시설 이용자의 미끄러짐·헛디딤·걸림·부딪침 등에 의한 손상사고 예방을 위해 시설에 대한 상시적 위험요인 탐색 및 유지관리 실시

- 교내 체육시설, 운동기구 등에 대한 정기적 점검 및 유지관리

- 교육시설 내 자동제세동기, 구급상자 등 응급처치 도구 비치 및 안내

## ○ 외국인 유학생 안전사고

- 재학 중인 외국인유학생의 안전한 대학생활을 위한 안전사고 예방 및 안전관리 실행

- 학생안전을 위한 대학의 안전관리활동에 관한 정보 제공 지원
- 비상시 대응절차 및 대응행동에 관한 정보 제공 지원
- 비상연락망 편성·관리 및 안내·배포
- 대학생활 관련 안전교육·훈련 제공 지원

## ② 대응·조치 단계 추진계획

### ○ 안전확인 및 조치

- 사고 또는 위급상황에 극복을 위해 안전 확보 및 관계기관 연락·신고

- 사고, 위급상황의 안전성 확인 및 안전성 확보
- 위험원으로 부터 학생과 교직원을 분리·이격 조치 및 상태 유지
- 「학교 응급의료 관리체계 매뉴얼」에 따른 응급처치 시행 또는 치료 제공
- 필요한 경우, 112 또는 119에 신고

### ○ 사고보고 및 지원요청

- 현장 관계자로부터 사고 또는 응급상황을 연락·보고받은 경우 사고 또는 위급상황에 대한 최초 사고 등급 평가 시행 및 보고 수준 결정

#### ※ 사고 등급에 따른 보고 기준

- (심각) 학교장 및 교육부에 지체없이 보고
- (경계) 학교장 및 교육부에 신속하게 보고 (1시간 이내)
- (주의) 학교장에게 가능한 한 신속하게 보고 (근무일 기준 1일 이내)
- (관심) 대학의 기관, 조직, 단체의 내부 관련 문서에 기록·관리

#### ※ 자동적으로 '심각' 등급을 받는 사고(또는 위급상황)

- 교육활동 중 사고 : 병원진료를 요하는 중상 이상의 사고
- 교육활동 외 사고 : 사망 1명 또는 부상 5명 이상의 사고
- 학교관련 시설에 대한 화재, 붕괴, 폭발 사고 등
- 학교현장의 폭발사고로 인명피해가 발생하고 시설피해가 심대한 경우
- 학교현장에서 신종 전염병 최초 발생 및 법정 전염병 집단 발생 시
- 기타 사회적 파장이 예상되는 사건·사고 및 국가적 대응이 필요한 재난 발생 시

### ○ 보험사고의 통지 및 관리

- 학교장(또는 대학의 기관, 조직, 단체의 장)은 사고 발생 시 해당 보험의 청구 시스템을 통해 이를 지체없이 보험회사에 통지
- 학교장(또는 대학의 기관, 조직, 단체의 장)은 사고로 인한 영향을 받은 사람들과의 협의를 통한 사고 위험성 관리와 재발방지 실행계획 수립·실행으로 보고 종결
- 학교장(또는 대학의 기관, 조직, 단체의 장)은 즉각적인 위험성을 갖고 있는 심각한 손상이나 사고에 대해 최단기간 내 협의에 착수

## ㉓ 수습·복구 단계 추진계획

### ○ 복구 실행 및 지원

- 사고 등급에 상관없이 모든 사고(또는 위급상황)에 대한 조치·지원
- 피해자에 대한 치료, 상담 등 지속적 지원

### ○ 사고 조사

- 사고(또는 위급상황)의 성격에 따라 학교경영자, 간부교직원, 안전담당자, 피해자(또는 보호자), 관련 교직원 등으로 사고조사(지원)팀 구성·운영

### ○ 사고 검토

- 사고(또는 위급상황) 관리에 있어 무엇이 효과적인지를 조사하고, 사고 원인 개선의 기회를 확인해 재발방지조치 개발·시행
- '주의', '경계', '심각' 등급 사고(또는 위급상황)의 경우, 학교장(또는 대학의 기관, 조직, 단체의 장)은 사고 검토를 통해 재발방지책 마련·시행

- (물리적 차원) 시설, 기계, 환경 등 물리적 특성과 관련된 공학적 또는 유지보수를 통한 재발방지책
- (조직적 차원) 안전관리상의 규정, 절차, 방법 등 조직적 특성과 관련된 규정·절차·방법의 신설 또는 개정을 통한 재발방지책 마련
- (교육적 차원) 안전교육이나 안전지도의 부족이나 부적절성과 같은 교육적 특성과 관련된 지도·교육의 실시 또는 교육과정의 수정을 통한 재발방지책 마련

- 일반적으로 사고 검토는 사고 발생로부터 3일 이내에 착수되어 21일 이내에 완료. 단, 시간적 또는 재정적 영향을 받는 사고 검토의 경우에는 기한 미적용

### ○ 사고 종결

- 사건 종결은 사고(또는 위급상황)를 공식적으로 마무리하는 과정으로 적절한 지원이 지속되고 있음을 확신한다거나, 진행 중인 관련 조사나 검토가 완료되었을 경우 재발방지책이 마련되었다는 책임자의 논평을 통해 종결



## 2 교육시설 안전사고

### 교육시설 등의 안전 및 유지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1조(목적)** 이 법은 교육시설에 관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와 교육시설의 종합적인 관리 및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안전하고 쾌적한 교육환경 조성 및 교육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관련 조항) 제6조, 제10조, 제12조, 제13조, 제14조 등

※ (관련 기준) △교육시설 안전점검 등에 관한 지침 △교육시설의 안전·유지관리기준  
△교육시설안전 인증 운영 규정 △교육시설 안전성평가 운영 기준 등

#### <담당부서 및 담당자>

구 분	담당 부서	직책	성 명	연락처	비고
팀장	시설관리팀	팀장	강경준	062-950-3506, kjkang@kwu.ac.kr	주관부서
팀원	"	팀원	김중화	062-950-3517, kinnal@kwu.ac.kr	
팀원	"	팀원	최영석	062-950-3515, yeongs.choi@kwu.ac.kr	
팀원	"	팀원	김호연	062-950-3512, hoykim@kwu.ac.kr	협조부서

### □ 위험요인

- **(교내시설)** 지붕과 기둥 또는 벽이 있는 것과 이에 부수되는 학교시설의 건설, 운영, 해체 등 건축물 생애주기 전(全) 과정에서 발생하는 건물파손 및 인명피해
  - 건물 구조·성능, 교육활동 공간·환경, 건물 마감재료 및 기계·전기 설비 등 교육시설 주요 구성요소의 파손 및 기능저하에 따른 이용제한 및 학습지원 차질 초래
- **(주변시설)** 학교경계로부터 50미터 범위 내의 시설물(건물, 설비, 조경, 환경시설 등)의 설치·유지·보수 등의 건설공사로 인한 학교시설 및 학교구성원 피해
  - 학교 인접 공사장의 가설공사, 굴착공사, 작업차량·장비 이동·운용 등으로 학교 시설 파손·이상 징후 발생과 학교구성원 통학안전 위협 및 옥외 학습활동 제한

### □ 예방·대응 및 재발방지 대책

- **(교내시설)** 교육시설의 계획·설계단계부터 시공 및 유지관리까지 안전성이 확보될 수 있도록 '교육시설안전 인증'을 적기에 취득하고, 안전·유지관리점검,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등의 정기·중점적인 점검·관리를 통해 안전성능 유지관리
- **(주변시설)** 학교인접시설 공사 착공 전 '안전성평가'를 실시하고, 교육시설 및 교육시설 이용자 안전 위협 시 인·허가권자에게 안전확보 및 시정요청

### 3 연구실사고

####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

**제1조(목적)** 이 법은 대학 및 연구기관 등에 설치된 과학기술분야 연구실의 안전을 확보하고, 연구실사고로 인한 피해를 적절하게 보상하여 연구활동종사자의 건강과 생명을 보호하며, 안전한 연구환경을 조성하여 연구활동 활성화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 (관련 조항) 제5조~제7조, 제9조, 제12조~제14조, 제20조, 제23조, 제24조, 제29조 등

※ (관련 기준) △연구실 안전관리규정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지침 등

#### <담당부서 및 담당자>

구 분	담당 부서	직책	성 명	연락처	비고
팀장	시설관리팀	팀장	강경준	062-950-3506, kjkang@kwu.ac.kr	주관부서
팀원	"	팀원	최영석	062-950-3515, yeongs.choi@kwu.ac.kr	
팀원	"	팀원	오세희	062-950-3950, osh0408@kwu.ac.kr	
팀장	학사운영팀	팀장	정혜선	062-950-3530, hsjung@kwu.ac.kr	협조부서
팀원	"	팀원	허주희	062-950-3519, juhi@kwu.ac.kr	

#### □ 위험요인

- **(연구실사고)** 화학·물리·생물학적 위험요인 등으로 부상·질병·신체장해·사망 등 연구활동 종사자의 생명·신체상 손해 및 연구실의 시설·장비 등의 훼손 발생
  - ※ [사고유형] 화학, 가스, 전기, 생물, 기계, 기타(화상, 상처출혈, 유해광선 접촉) 등 13개 사고 유형
  - 연구활동 중 연구실 내 화학물질·가스 누출·접촉 및 폭발, 감전·전기화재, 병원성 물질 유출, 끼임·절단 등의 사고발생으로 연구활동 종사자의 안전과 건강 위협

#### □ 예방·대응 및 재발방지 대책

- **(점검)** 정기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실행을 통해 연구실 내 개선사항 혹은 문제점을 파악하고 이를 안전환경 개선에 반영
- **(환경개선)** 연구실 사고 예방을 위한 연구실·사무공간 분리, 안전용품 내구연한 관리, 연구실 환경개선 지원사업 신청
- **(교육)** 연구활동종사자에 대한 연구책임자, 연구실 안전환경관리자의 상시 안전 교육 실시 및 정기교육 참여 독려

○ (연구실사고)

# 연구실 사고 대응 체계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과학기술안전기반팀):

044-202-4856

FAX : 044-202-6029

\* 안전정책 수립·시행

보고

- 연구실 주체의 장 -

\* 사고대책본부운영

1. 사고대응반 구성

2. 현장사고조사반 구성

\* 사고수습 대책 및

수립 시행

안전관리지원부서 : 950-3950

FAX : 950-3917

(연구실 안전환경관리자)

\* 사고원인 분석

\* 사고현장 출입 통제

\* 사고발생 개요 및 피해상황 보고

\* 사고조치 및 전망

\* 그 밖의 중요사항 보고

협조요청

소방서 : 119

사고현장 보고

협조요청

사고대응 지시

사고발생  
알림

최초발견자

- 연구실책임자(책임교수) 및 연구활동종사자

\* 초기 인명구호활동 및 사고피해의 확대 방지 주력

\* 인명피해자 긴급 후송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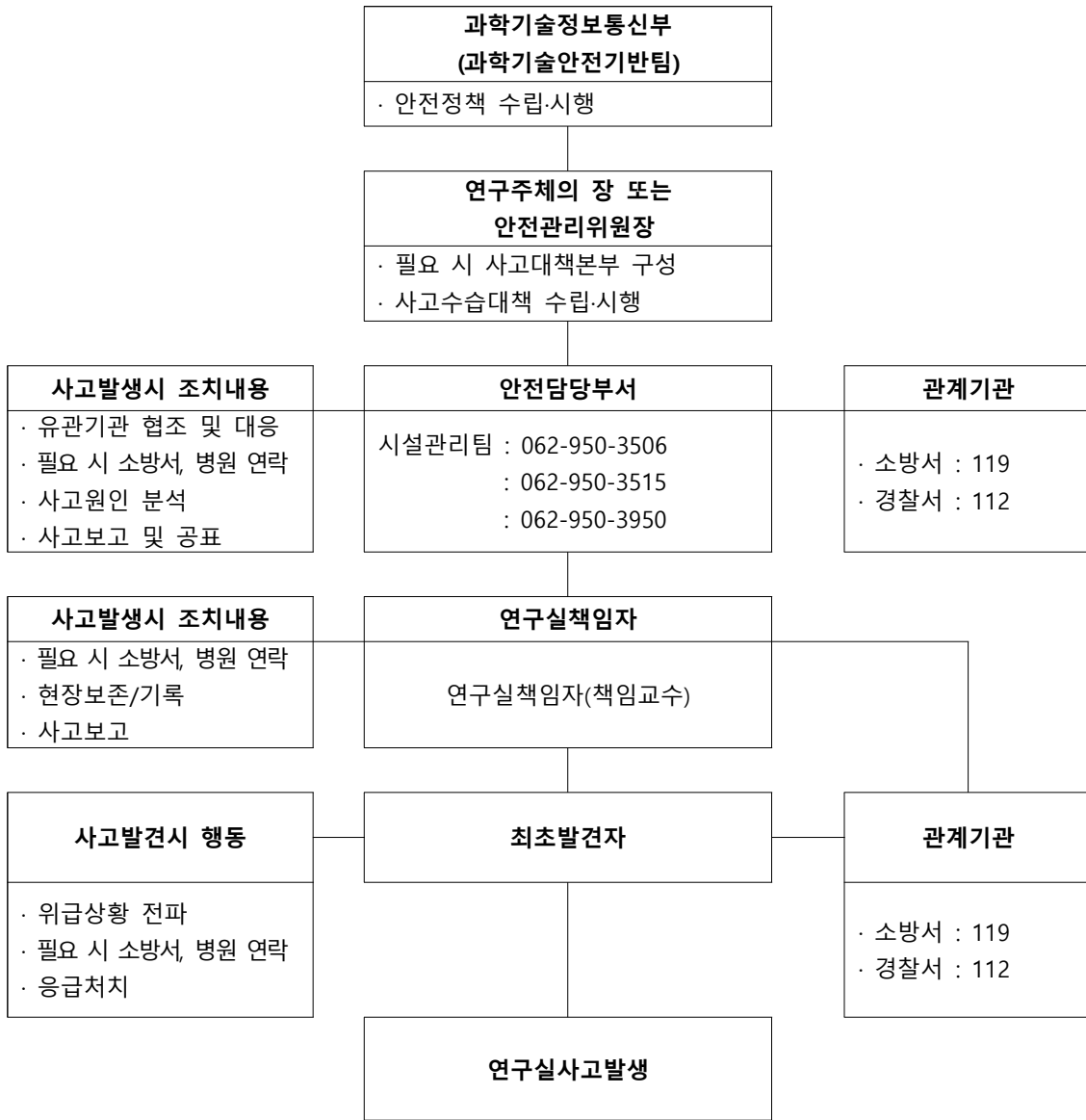
\* 유관기관 협조 및 대응

\* 피해자 가족 대응

\* 안전관리지원부서 사고 내용 제출

○ (사고대응)

### 연구실 사고보고 체계





□ 예방·대응 및 재발방지 대책

- (비대면 교육) 코로나19가 지속되는 동안 대학의 각종 활동(수업·행사·자치활동·운동부 훈련 등)은 가급적 비대면 방식을 활용하거나 연기를 원칙으로 학사 운영
- (대면 교육) 감염병 예방교육 강화, 환경 위생관리 및 사회적 거리두기 등으로 감염 예방을 철저히 하고, 유증상자 조기 발견·조치 등 대학 내 코로나-19 감염 전파·확산을 방지

□ 대학 업무연속성계획(BCP: Business Continuity Plan)수립 및 시행

○ 확진자 증가에 대비한 대학 비상체계 구축

○ (BCP 발동 대응체계)

**< 비상대응기준 >**

BCP 발동 기준		비상대응계획 주요 내용	
<p>①전체 방역상황</p> <p>중대본 발표 또는 지자체 권고</p>	⇒	1단계 비상계획 발동	<p>학사</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사전지정한 필수 수업은 대면 진행</li> <li>• 그 외 수업 비대면 전환</li> </ul>
<p>②학내 감염상황*</p> <p>해당 대학 확진자 비율 5% 내외 (교내 확진자 200명이상) (1주 기준)</p>			⇒
<p>①전체 방역상황</p> <p>중대본 발표 또는 지자체 권고</p>	⇒	2단계 비상계획 발동	<p>학사</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전면 비대면 전환 가능</li> </ul>
<p>②학내 감염상황*</p> <p>해당 대학 확진자 비율 10% 내외 (교내 확진자 400명이상) (1주 기준)</p>			⇒
			<p>시설 이용</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외부인 학교 출입 제한</li> <li>• 다중이용시설 중심 집중 점검</li> </ul>
			<p>시설 이용</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최소인원 외 학교 출입 제한</li> <li>• 필수운영시설 외 건물 폐쇄</li> </ul>

## 4. 범죄

### 1] 일반범죄

#### 폭력행위처벌법 & 범죄피해자 보호법

##### 폭력행위처벌법

**제1조(목적)** 이 법은 집단적 또는 상습적으로 폭력행위 등을 범하거나 흉기 또는 그 밖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폭력행위 등을 범한 사람 등을 처벌함을 목적으로 한다.

※ (관련 기준) △범죄예방 건축기준 고시 △건축물의 범죄예방 설계 가이드라인 등

##### 범죄피해자 보호법

**제1조(목적)** 이 법은 범죄피해자 보호·지원의 기본 정책 등을 정하고 타인의 범죄행위로 인하여 생명·신체에 피해를 받은 사람을 구조(救助)함으로써 범죄피해자의 복지 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 <담당부서 및 담당자>

구 분	담당 부서	직책	성 명	연락처	비고
팀장	총무팀	팀장	강경준	062-950-3506, kjkang@kwu.ac.kr	주관부서
팀원	"	팀원	김호연	062-950-3512, hoykim@kwu.ac.kr	
주무팀장	학생지원팀	주무팀장	노상석	062-950-3611, ssno@kwu.ac.kr	협조부서
팀원	"	팀원	김종성	062-950-3590, jskim@kwu.ac.kr	

### □ 위험요인

- **(폭행 행위)** 집단적 또는 상습적으로 폭력행위 등을 범하거나 흉기 또는 그 밖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행하는 폭력행위
  - 학교 구성원간 또는 외부인에 의한 폭행 등 학교 내에 발생하는 폭력행위
- **(교내 주요공간 침입)** 본교 구성원이 근무·관리하는 행정공간, 연구실, 강의실, 실습실 등에 침입하거나 이러한 장소에서 퇴거 요구를 받고 응하지 아니하는 범죄
  - 학교시설에 대한 외부인의 무단침입·점거, 재물손괴, 업무방해 등의 범죄발생으로 학교구성원의 안전·신변 위협 및 학습권 침해

### □ 예방·대응 및 재발방지 대책

- **(범죄예방)** 범죄예방과 안전한 생활환경 조성을 위해 건축물, 건축설비 및 대지에 관한 범죄예방 설계\*를 시행하고, 순찰·신고 및 보고 체계 구축, 폭행사고 발생 시 초동대처요령 및 행동 매뉴얼 수립·교육 등의 사전대책방안 마련
- **(대응조치)** 범죄피해자·목격자의 신고·비상벨 작동 시 학생지원센터, 통합보안실 등 해당 지원부서 즉각 출동·조치 및 유관 기관(경찰서·소방서 등) 신고
- **(회복지원)** 범죄에 의해 피해를 입은 피해자들의 존엄성 보장과 명예·사생활 보호 및 회복·지원을 위해 범죄발생 초기부터 다양한 피해자 보호·지원 활동 전개

## 《 [범죄공통] 범죄 예방·대응 및 재발방지 대책 》

### ① 예방·대비 단계 추진계획

#### ○ 교내 범죄

- 대학구성원의 신변안전을 위해 전문경비업체에 의한 교내 출입통제 및 범죄 예방 순찰 실시

- 대학생활과 대학행정을 위한 교육시설의 개방 및 접근통제 관리
- 범죄 예방을 위한 교내 순찰 활동
- 사고 현장에서의 범죄 피해자 보호
- 범죄 발생 신고 접수·대응
- 범죄 발생 시 자체적 원인 조사 및 재발방지를 위한 개선 방안 제언
- 범죄 사건 발생 데이터 수집·관리

- 범죄예방과 안전한 생활환경 조성을 위해 범죄예방 설계(CEPTED) 기법 적용

- **(자연적 감시)** 도로 등 공공 공간에 대하여 시각적인 접근과 노출이 최대화되도록 건축물의 배치, 조경, 조명 등을 통하여 감시를 강화
- **(접근통제)** 출입문, 담장, 울타리, 조경, 안내판, 방범시설 등 '접근통제시설'을 적정하게 설치하여 외부인의 진·출입을 통제
- **(영역성 확보)** 공간배치와 시설물 설치를 통해 공적 공간과 사적 공간의 소유권 및 관리와 책임 범위를 명확히 하는 것
- **(활동의 활성화)** 일정한 지역에 대한 자연적 감시를 강화하기 위하여 대상 공간 이용을 활성화 시킬 수 있는 시설물 및 공간 계획을 하는 것

### ② 대응·조치 단계 추진계획

#### ○ 안전확인 및 조치

- 사고 또는 위급상황에 극복을 위해 안전 확보 및 증거 기록

- 학생(또는 교직원)이 다른 학생(또는 교직원)에게 해를 주었다고 신고 되거나 의심되는 경우, 이들이 피해자와 접촉할 수 없도록 조치
- 목격자(학생 또는 교직원)에 대한 지원 제공
- 물리적 또는 문서상의 증거를 보존·기록
- 목격자가 여러 명인 경우, 개별 인터뷰를 하기 전까지 이들을 서로 분리함으로써 이들 증언의 온전성이 오염되지 않도록 조치
- 필요한 경우, 112 또는 119에 신고

## ○ 사고보고 및 지원요청

- 현장 관계자로부터 사고 또는 응급상황을 연락·보고받은 경우 사고 또는 위급상황에 대한 최초 사고 등급 평가 실시 및 보고 수준 결정

- '심각'(빨간색), '경계'(주황색)로 평가된 사고 또는 위급상황은 학교장 및 교육부에 보고
- '주의'(노란색)로 평가된 사고 또는 위급상황은 학교장에게 보고
- '관심'(파란색)으로 평가된 사고 또는 위급상황은 대학의 기관, 조직, 단체의 장이 관리

## ○ 보험사고의 통지 및 관리

- 학교장(또는 대학의 기관, 조직, 단체의 장)은 사고 발생 시 해당 보험의 청구 시스템을 통해 이를 지체 없이 보험회사에 통지
- 학교장(또는 대학의 기관, 조직, 단체의 장)은 사고로 인한 영향을 받은 사람들과의 협의를 통한 사고 위험성 관리와 재발방지 실행계획 수립·실행으로 보고 종결
- 학교장(또는 대학의 기관, 조직, 단체의 장)은 즉각적인 위험성을 갖고 있는 심각한 손상이나 사고에 대해 최단 기간 내 협의에 착수

## ③ 수습·복구 단계 추진계획

### ○ 지원 및 복구 실행

- 사고 등급에 상관없이 모든 사고(또는 위급상황)에 대한 조치·지원

- 학생의 안전을 위한 적극적인 조치 및 지속적인 위험관리 전략 수립·시행
- 경찰 신고를 포함한 학생이나 그 가족이 하고자 하는 법적 처리와 배상 청구 활동의 지원

- 피해자에 대한 치료, 상담, 그 밖의 전문적인 지원서비스 등의 지속적 지원

### ○ 사고 조사

- 사고(또는 위급상황)의 성격에 따라 학교경영자, 안전·보건담당자, 피해자(또는 보호자), 관련 교직원 등으로 사고조사(지원)팀 구성·운영

- 조사 해당 여부 확인을 위한 예비검사(preliminary screening) : 보고일로 부터 2일 이내 착수  
※ 사고 등급에 따른 착수의 책임 : △(관심주의) 대학의 기관, 조직, 단체의 장 △(경계심각) 학교장
- 사고(또는 위급상황)의 원인과 잠재적 위험요인 확인
- 위험성 통제와 예방적 조치 사항 제시

### ○ 사고 검토

- 사고(또는 위급상황) 관리에 있어 무엇이 효과적인지를 조사하고, 사고원인 개선의 기회를 확인해 재발방지조치 개발·시행
- '주의', '경계', '심각' 등급 사고(또는 위급상황)의 경우, 대학의 기관, 조직, 단체의 장은 사고 검토를 통해 재발방지책 마련·시행

- (물리적 차원) 시설, 기계, 환경 등 물리적 특성과 관련된 공학적 또는 유지보수를 통한 재발방지책
- (조직적 차원) 안전관리상의 규정, 절차, 방법 등 조직적 특성과 관련된 규정·절차·방법의 신설 또는 개정을 통한 재발방지책 마련
- (교육적 차원) 안전교육이나 안전지도의 부족이나 부적절성과 같은 교육적 특성과 관련된 지도·교육의 실시 또는 교육과정의 수정을 통한 재발방지책 마련

- 일반적으로 사고 검토는 사고 발생로부터 3일 이내에 착수되어 21일 이내에 완료 단, 시간적 또는 재정적 영향을 받는 사고 검토의 경우에는 기한 미적용

### ○ 사고 종결

- 사건 종결은 사고(또는 위급상황)를 공식적으로 마무리하는 과정으로 적절한 지원이 지속되고 있음을 확신한다거나, 진행 중인 관련 조사나 검토가 완료되었을 경우 재발방지책이 마련되었다는 책임자의 논평을 통해 종결

## 범죄피해자 보호·지원 계획 비전·목표

<b>비전</b>	<b>범죄피해자의 인권존중 및 인간다운 삶의 보장 실현</b>		
<b>목표</b>	<b>“원상회복”</b> 완전한 피해회복을 위한 연속적 지원서비스 제공	<b>“실질적 참여”</b> 형사절차에서 피해자의 법적 지위 강화와 참여기회 확대	<b>“평온하고 안전한 삶으로 복귀”</b> 신변 및 정보보호를 통한 2차피해와 재피해 예방
<b>추진 정책</b>	<b>피해회복 지원의 내실화 및 대상 확대</b>	- 범죄 발생 직후 응급위기 지원 강화 - 피해회복 지원 서비스의 질적 향상 - 경제적 지원(구조금 포함)의 실질화 및 효율적 집행체계 구축	
	<b>가해자의 책임인식 및 피해배상 촉진</b>	- 형사조정제도의 실질화 - 가해자의 피해배상 촉진	
	<b>형사절차 참여기반 강화 및 참여 기회 확대</b>	- 피해자 정보접근권 확대 및 강화 - 법률조력의 확대 및 전문성 강화 - 피해자의 형사절차 진술권 강화	
	<b>피해자의 정보 및 신변보호와 2차피해 예방</b>	- 피해자의 정보보호 강화 - 피해자의 신변보호 강화 - 형사절차에서의 2차피해 예방	
	<b>협력적 정책추진체계 구축 및 정책기반 강화</b>	- 협력적 정책추진체계 구축 - 정책기반 강화	

## 2 성범죄

### 양성평등기본법 & 성폭력처벌법

#### 양성평등기본법

**제20조(성희롱 방지조치 등)** ①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및 제2조에 따른 공공단체(이하 “국가기관등”이라 한다)의 장은 법 제31조제1항에 따라 성희롱 방지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여야 하며,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제1항에 따른 사업 또는 사업장 중 국가기관등이 아닌 사업 또는 사업장의 사업주는 같은 법에 따라 성희롱 방지조치를 하여야 한다.

#### 성폭력처벌법

**제1조(목적)** 이 법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그 절차에 관한 특례를 규정함으로써 성폭력범죄 피해자의 생명과 신체의 안전을 보장하고 건강한 사회질서의 확립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관련 조항) 제10조, 제11조, 제14조의2, 제14조의3 등

#### <담당부서 및 담당자>

구 분	담당 부서	직책	성 명	연락처	비고
센터장	대학인권센터	센터장	곽경화	062-950-3755, greenkh@kwu.ac.kr	주관부서
주무팀장	"	주무팀장	노상석	062-950-3611, ssno@kwu.ac.kr	
팀원	"	팀원	이현욱	062-950-3857, soccerworld@kwu.ac.kr	
팀장	총무팀	팀장	강경준	062-950-3506, kjkang@kwu.ac.kr	협조부서
팀원	"	팀원	김호연	062-950-3512, hoykim@kwu.ac.kr	

## □ 위험요인

- **(성희롱 행위)** 업무, 고용 등의 관계에서 학교 종사자, 사용자, 근로자가 성적 언동, 성적 요구 등으로 상대방에게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 등을 느끼게 하는 행위
  - ※ 시각적 성희롱, 언어적 성희롱, 육체적 성희롱 등
  - 지위를 이용하거나 업무 등과 관련한 성적 언동과 성적 요구를 일삼고, 이를 수용하지 않는 경우 불이익을 자행하는 등 개인의 존엄 경시 및 인권 유린상황 발생
- **(성폭력 범죄)** 추행, 간음 또는 성매매와 성적 착취를 목적으로 폭행, 협박, 위계, 위력 등을 사용하여 상대방의 성적 자기결정권을 침해하는 모든 성적 가해 행위
  - ※ (유사)강간, 준강간, (준)강제추행, 데이트성폭력, 스토킹, 통신매체 이용음란, 카메라 등 이용촬영 등

## □ 예방·대응 및 재발방지 대책

- **(성희롱 행위)** 성차별, 편견, 비하 및 폭력 없이 인권을 동등하게 보장받고 모든 영역에 동등하게 참여하고 대우받을 수 있도록 성희롱 예방·대응 체계 구축·운영
- **(성폭력 범죄)** 성폭력 범죄에 대한 상시 예방·점검 창구 마련을 통한 범죄 사전예방과 상담-조사-심의-조치 등 전(全) 단계에 대한 체계적·종합적인 기반 조성

## 5. 산업재해 및 중대재해

### 1 산업재해

#### 산업안전보건법

**제1조(목적)** 이 법은 산업 안전 및 보건에 관한 기준을 확립하고 그 책임의 소재를 명확하게 하여 산업재해를 예방하고 쾌적한 작업환경을 조성함으로써 노무를 제공하는 사람의 안전 및 보건을 유지·증진함을 목적으로 한다.

※ (관련 조항) 제3조, 제15조~19조, 제25조, 제29조, 제32조, 제37조, 제38조, 제40조, 제54조

※ (관련 기준) 공공행정 등에서 현업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의 기준 : 현업업무 종사자 업무내용 규정

☞ 학교 시설물 및 설비·장비 등의 유지관리, 학교 경비 및 학생 통학보조, 조리 실무 및 급식실 운영 등 조리 관련 업무

#### <담당부서 및 담당자>

구 분	담당 부서	직책	성 명	연락처	비고
팀장	시설관리팀, 총무팀	팀장	강경준	062-950-3506, kjkang@kwu.ac.kr	주관부서
팀원	총무팀	팀원	김호연	062-950-3512, hoykim@kwu.ac.kr	
팀원	시설관리팀	팀원	김중화	062-950-3517, kinnal@kwu.ac.kr	협조부서
팀원	"	팀원	최영석	062-950-3515, yeongs.choi@kwu.ac.kr	
팀원	"	팀원	오세희	062-950-3950, osh0408@kwu.ac.kr	

### □ 위험요인

- (산업재해) 근로자가 업무에 관계되는 건설물·설비·원재료·가스·증기·분진 등에 의하거나 작업 또는 그 밖의 업무로 인해 사망 또는 부상하거나 질병에 걸리는 것
- ※ (주요사유) 안전(예방)대책 미비·부실, 근로자 피로, 작업상 부주의·실수, 숙련 미달 등
- 사업장별 잠재적 위해·위험요인에 의한 산업재해의 발생으로 일하는 사람의 생명과 건강의 위협과 노동생산성 저하 및 효율성 저해

### □ 예방·대응 및 재발방지 대책

- (안전조치) 위험기계·위험물질 사용 시, 조작·운반 등 위험한 작업 시, 추락·붕괴 등 위험한 장소에서 작업 시 안전조치 이행
- (보건조치) 건강장해발생과 단순 반복작업 등의 인체 부담작업 시 근로자의 건강 상태를 주기적으로 측정하여 질병의 조기 발견 및 사후관리

## 《 산업재해 예방·대응 및 재발방지 대책 》

### ① 예방·대비 단계 추진계획

#### ○ 산업재해 예방계획 수립

- '22년도 산업재해 통계분석 등을 바탕으로 기관별 산업재해 재발방지 대책을 반영한 산업재해 예방 기본계획 수립·추진
- '23년도에는 구성된 체계에서 각 기관별 특성에 맞는 구체적이고 세부적인 안전보건조치를 포함한 산업재해 예방계획 수립

#### ○ 안전보건교육에 관한 사항

- 안전보건교육은 작업으로 인한 유해·위험을 인지하고 스스로 안전과 건강을 보호하는 데 필요한 정보를 제공

#### ○ 작업환경 점검 및 개선에 관한 사항

- 작업장에서 발생되고 있는 유해인자(소음, 분진, 유해화학물질 등)에 근로자의 노출 수준을 평가, 안전한 작업환경을 조성

#### ○ 근로자 건강관리에 관한 사항

- 근로자의 건강상태 및 수준을 파악, 근로자 건강관리를 위한 기초 자료를 마련, 적절한 작업배치와 직업성 질병의 조기 발견 및 사후관리

#### ○ 산업재해 재발방지 대책 수립

- 산업재해 발생에 대해 은폐해서는 안 되며, 재해를 통해 향후 동종재해가 재발하지 않도록 관련 대책을 수립·시행

#### ○ 산업재해 통계기록 및 유지·관리

- 산업재해의 종합적인 예방대책 수립·시행을 위한 기초 자료 활용
- 교육부의 산업재해 통계 보고 양식에 따라, 교육기관 산업재해 발생 현황을 점검

#### ○ 안전시설 및 보호구

- 보호구 착용은 작업환경 또는 작업수행 시 발생하는 유해·위험으로부터 신체를 보호
- 노출된 유해·위험의 종류를 알고 그에 적절한 보호구를 선정하여 지급하고 필요시 착용할 수 있도록 교육

#### ○ 유해·위험 방지 활동

- 위험성 평가

- 산업재해를 미리 방지하고, 자율적인 안전보건관리 체계를 구축·운영하기 위해 사업장의 유해·위험 요인을 파악하고, 개선 방안을 수립·시행  
※ 「산업안전보건법」 제36조(위험성평가의 실시) 및 「사업장 위험성평가에 관한 지침」(고용노동부 고시 제2020-53호)
- 정기평가는 전체 작업을 대상으로 연 1회, 수시평가는 건물, 기계·기구 등의 보수 또는 신규도입 및 재해 발생 시 실시

## ② 대응·조치 단계 추진계획

### ○ 안전확인 및 조치

- 사고 또는 위급상황에 극복을 위해 안전 확보 및 현장 보존

- 대학의 기관, 조직, 단체의 현장 관계자는 즉시 해당 작업을 중지시키고 근로자를 작업 장소에서 대피 조치
- 피해자에게 응급처치를 제공한다거나 장소를 안전하게 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와 같은 즉각적인 조치를 제외한 사고현장의 보존
- 필요한 경우, 112 또는 119에 신고

### ○ 사고보고 및 지원요청

- 현장 관계자로부터 사고 또는 응급상황을 연락·보고받은 경우 사고 또는 위급상황에 대한 최초 사고 등급 평가 실시 및 보고 수준 결정

- '심각'(빨간색), '경계'(주황색)로 평가된 사고 또는 위급상황은 학교장 및 교육부에 보고
- '주의'(노란색)로 평가된 사고 또는 위급상황은 학교장에게 보고
- '관심'(파란색)으로 평가된 사고 또는 위급상황은 대학의 기관, 조직, 단체의 장이 관리

- 산업재해 발생 시 발생한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산업재해조사표를 작성,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에 제출
- 중대재해 발생 시 지체 없이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에게 전화·팩스 또는 그 밖의 적절한 방법으로 발생개요·피해상황, 조치·전망 등에 관한 사항을 보고

### ○ 보험사고의 통지 및 관리

- 학교장(또는 대학의 기관, 조직, 단체의 장)은 사고 발생 시 해당 보험의 청구 시스템을 통해 이를 지체 없이 보험회사에 통지
- 학교장(또는 대학의 기관, 조직, 단체의 장)은 사고로 인한 영향을 받은 사람들과의 협의를 통한 사고 위험성 관리와 재발방지 실행계획 수립·실행으로 보고 종결
- 학교장(또는 대학의 기관, 조직, 단체의 장)은 즉각적인 위험성을 갖고 있는 심각한 손상이나 사고에 대해 최단기간 내 협의에 착수

## ③ 수습·복구 단계 추진계획

### ○ 지원 및 복구 실행

- 사고 등급에 상관없이 모든 사고(또는 위급상황)에 대한 조치·지원

- 학생의 안전을 위한 적극적인 조치 및 지속적인 위험관리 전략 수립·시행
- 경찰 신고를 포함한 학생이나 그 가족이 하고자 하는 법적 처리와 배상 청구 활동의 지원

- 피해자에 대한 치료, 상담, 그 밖의 전문적인 지원서비스 등의 지속적 지원

## ○ 사고 조사

- 사고(또는 위급상황)의 성격에 따라 학교경영자, 안전·보건담당자, 피해자(또는 보호자), 관련 교직원 등으로 사고조사(지원)팀 구성·운영

- 조사 해당 여부 확인을 위한 예비검사(preliminary screening) : 보고일로 부터 2일 이내 착수  
※ 사고 등급에 따른 착수의 책임 : △(관심주의) 대학의 기관, 조직, 단체의 장 △(경계심각) 학교장
- 사고(또는 위급상황)의 원인과 잠재적 위험요인 확인
- 위험성 통제와 예방적 조치 사항 제시

## ○ 사고 검토

- 사고(또는 위급상황) 관리에 있어 무엇이 효과적이지를 조사하고, 사고 원인 개선의 기회를 확인해 재발방지조치 개발·시행
- '주의', '경계', '심각' 등급 사고(또는 위급상황)의 경우, 학교장(또는 대학의 기관, 조직, 단체의 장)은 사고 검토를 통해 재발방지책 마련·시행

- (물리적 차원) 시설, 기계, 환경 등 물리적 특성과 관련된 공학적 또는 유지보수를 통한 재발방지책
- (조직적 차원) 안전관리상의 규정, 절차, 방법 등 조직적 특성과 관련된 규정·절차·방법의 신설 또는 개정을 통한 재발방지책 마련
- (교육적 차원) 안전교육이나 안전지도의 부족이나 부적절성과 같은 교육적 특성과 관련된 지도·교육의 실시 또는 교육과정의 수정을 통한 재발방지책 마련

- 일반적으로 사고 검토는 사고 발생로부터 3일 이내에 착수되어 21일 이내에 완료 단, 시간적 또는 재정적 영향을 받는 사고 검토의 경우에는 기한 미적용

## ○ 사고 종결

- 사건 종결은 사고(또는 위급상황)를 공식적으로 마무리하는 과정으로 적절한 지원이 지속되고 있음을 확신한다거나, 진행 중인 관련 조사나 검토가 완료되었을 경우 재발방지책이 마련되었다는 책임자의 논평을 통해 종결

## 2 중대재해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조(목적)** 이 법은 사업 또는 사업장, 공중이용시설 및 대중교통수단을 운영하거나 인체에 해로운 원료나 제조물을 취급하면서 안전·보건 조치의무를 위반하여 인명피해를 발생하게 한 사업주, 경영책임자, 공무원 및 법인의 처벌 등을 규정함으로써 중대재해를 예방하고 시민과 종사자의 생명과 신체를 보호함을 목적으로 한다.

※ (관련 조항) 제2조~제4조, 제6조, 제9조 등

#### <담당부서 및 담당자>

구 분	담당 부서	직책	성 명	연락처	비고
팀장	시설관리팀, 총무팀	팀장	강경준	062-950-3506, kjkang@kwu.ac.kr	주관부서
팀원	총무팀	팀원	김호연	062-950-3512, hoykim@kwu.ac.kr	
팀원	시설관리팀	팀원	김중화	062-950-3517, kinnal@kwu.ac.kr	협조부서
팀원	"	팀원	최영석	062-950-3515, yeongs.choi@kwu.ac.kr	
팀원	"	팀원	오세희	062-950-3950, osh0408@kwu.ac.kr	

## □ 위험요인

- **(중대재해)** 중대산업재해, 중대시민재해를 통칭하나, 공공이용시설(교육기관)은 중대시민재해 범위에서 제외되어 교육기관은 '중대산업재해\*'만 해당
  - \* 「산업안전보건법」 상 산업재해 중 사망자 1인 이상 발생, 동일사고로 6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부상자가 2명 이상 발생, 동일 유해요인으로 직업성 질병자 1년 내 3명 이상 발생 등
  - 사업장별 잠재적 위해·위험요인에 의한 중대한 산업재해의 발생으로 근로자의 안전사고 위험노출 및 신체적·정신적 건강위험

## □ 예방·대응 및 재발방지 대책

### 《 중대재해 예방·대응 및 재발방지 대책 》

#### ① 예방·대비 단계 추진계획

##### ○ 안전·보건 목표와 경영방침 설정(시행령 제4조제1호)

- 산업재해가 없는 근로환경 조성을 목표로 안전한 교육환경 구현을 위해 핵심적인 목표 및 경영방침 마련

- 안전보건 법규 등 관련 규정 준수, 안전한 근무환경 구현을 최우선으로 하는 경영시스템 구축·운영
- 안전한 근무환경 조성을 위해 유해·위험요인 발굴·제거 등 재해예방 활동 지속적 실시
- 모든 종사자의 건강과 안전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 체계적인 교육훈련 지원
- 안전보건에 관한 중요 사항 결정 시 소통을 통한 근로자의 참여 보장 등 투명한 안전보건 경영

○ **사업장 유해·위험요인 확인·개선 여부 점검(시행령 제4조제3호)**

- 재해예방의 핵심과제로 사업장별·직종별 유해성평가 후 유해요인 발견 즉시 개선
- 위험성평가 결과에 따른 사업장별 유해·위험요인의 확인·개선여부 점검(분기별 1회)

○ **재해예방에 필요한 예산 편성 및 집행 추진(시행령 제4조제4호)**

- 위험성 평가, 재해예방 기술지도, 근골격계 유해요인 조사, 위험요소 개선, 안전보건 교육 등은 필수적으로 예산 확보 및 집행

※ (주요항목) 안전·보건에 관한 인력, 시설 및 장비의 구비, 유해·위험요인의 개선 등

○ **안전보건관리책임자등의 충실한 업무수행 지원(시행령 제4조제5호)**

- 예산부서 등과 협의하여 안전보건관리책임자에게 해당 업무를 수행하는데 필요한 권한\*과 예산에 대한 자율권 확대 추진

\* 「산업안전보건법」 제15조에 따라 사업장의 안전보건 업무를 실질적으로 총괄하여 관리할 수 있는 권한 부여

- 안전보건관리책임자 등의 해당 업무수행 여부를 평가기준에 따라 상·하반기 각 1회 자체 평가 실시

○ **종사자 의견 청취 절차 마련(시행령 제4조제7호)**

- 사업장의 안전·보건에 관한 사항에 대해 종사자의 의견 청취(반기별 1회 이상)
- 게시판 내 안전보건 건의함을 신설, 안전보건에 관한 의견을 상시 청취할 수 있는 절차를 마련하여 안전·보건에 관한 종사자 의견을 듣고, 재해예방이 필요한 경우 개선조치

○ **중대산업재해 발생 대비 매뉴얼 준수(시행령 제4조제8호)**

- 산업안전보건법에 규정된 산업재해 및 중대재해 발생 시 조치사항 매뉴얼\*에 따라, 중대산업재해 발생 등 급박한 위험에 대비

\* 청소·환경미화, 시설관리, 경비, 통학보조 등 직종별 산업안전보건 매뉴얼(교육부, '22.)

○ **도급, 용역, 위탁 등 종사자의 안전 보건 확보 조치(시행령 제4조제9호)**

- 업무의 도급, 용역, 위탁 등을 하는 경우, 종사자의 안전·보건 확보 기준과 절차 마련 및 점검(반기 1회 이상)

○ **안전·보건 업무 총괄·관리 담당부서 지정(시행령 제4조제2호)**

- 업무의 중요도·계속성을 감안, 중대재해 업무담당 전담인력(2인 이상)을 확보하여 실질적인 컨트롤타워 역할을 수행할 전담조직 설치 추진

※ 안전관리자 등 전문가 인력이 총 3명 이상이고 상시근로자 수가 500명 이상인 경우 안전·보건에 관한 업무를 총괄·관리하는 전담 조직 의무적으로 설치

- 전담조직의 중대재해 업무가 산업안전보건법상 의무사항 이행 여부를 점검하는 업무이므로 두 업무는 구분 운영 추진

㉔ **대응·조치 단계 추진계획, ㉕ 수습·복구 단계 추진계획**

※ ㉔ 산업재해 대응·조치, 수습·복구 단계 추진계획과 상동

## 중대재해 관리체계 및 이행계획

구분	중대재해처벌법
의무주체	경영책임자 : 법인은 양벌규정으로 처벌
보호대상	종사자 : 근로자, 노무제공자, 수급인, 수급인의 근로자 및 노무제공자
처벌대상	<b>경영책임자</b> (사망) 1년 이상 징역 또는 10억원 이하 벌금(병과 가능) (그외) 7년 이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 벌금
재해정의	<b>(중대산업재해)</b> 산안법상 산업재해 중 - 사망자 1명 이상 - 동일 사고로 6개월 이상 치료 필요 부상자가 2명 이상 - 동일 유해요인으로 직업성 질병자 1년 내 3명 이상 <b>(중대시민재해)</b> 공중이용시설-교육기관 제외
의무 이행사항	<b>«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및 이행에 관한 조치 »</b> 1. 안전보건목표와 경영방침 설정 2. 총괄 관리 전담 조직 설치 ※ 컨트롤타워 역할: 총괄관리의 의미로 안전·보건업무 직접수행의 의미는 아님 3. 유해·위험요인 확인·개선 절차 마련 및 점검·조치 4. 인력, 시설, 장비 구비 및 개선 예산편성 집행 5. 안전보건관리책임자의 충실한 업무수행 지원 6. 전문인력 배치(안전·보건관리자 등) 7. 종사자 의견청취 절차 마련, 점검 8. 중대산업재해 발생 시 조치 매뉴얼 마련 9. 제3자의 도급, 용역, 위탁의 안전관리를 위한 평가기준 및 절차 마련  <b>«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b> 1. 반기 1회 이상 점검, 결과보고 2. 인력, 예산 지원 3. 안전보건교육 실시 및 확인

## 6. 기타

### 1 비상사태

#### 비상대비자원 관리법 & 통합방위법

##### 비상대비자원 관리법

**제1조(목적)** 이 법은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비상시(이하 "비상사태"라 한다)에 국가의 인력·물자 등 자원을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이에 대비한 계획의 수립·자원관리·교육 및 훈련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관련 조항) 제9조2, 제13조의5 등

##### 통합방위법

**제1조(목적)** 이 법은 적(敵)의 침투·도발이나 그 위협에 대응하기 위하여 국가 총력전(總力戰)의 개념을 바탕으로 국가방위요소를 통합·운용하기 위한 통합방위 대책을 수립·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관련 조항) 제17조, 제13조의5 등

#### <담당부서 및 담당자>

구 분	담당 부서	직책	성 명	연락처	비고
팀장	시설관리팀, 총무팀	팀장	강경준	062-950-3506, kjkang@kwu.ac.	주관부서
팀원	총무팀	팀원	김호연	062-950-3512, hoykim@kwu.ac.kr	
팀원	시설관리팀	팀원	김중화	062-950-3517, kinnal@kwu.ac.kr	협조부서
팀원	"	팀원	최영석	062-950-3515, yeongs.choi@kwu.ac.kr	
팀원	"	팀원	오세희	062-950-3950, osh0408@kwu.ac.kr	

#### □ 위험요인

- (비상사태) 전시·사변 및 이에 준하는 사태 등이 발생하여 국가·공공의 안녕과 질서를 교란하고 국민의 안전과 생명을 위협하는 국가차원의 긴급 상황
  - 공습·포격, 핵·방사능 피폭, 생물·화학무기 피해 등 적 공격에 따른 국가 비상사태의 발생으로 국가의 주요 시설 파손 및 국민의 생명·재산 피해

#### □ 예방·대응 및 재발방지 대책

- (계획수립) 비상시 행동요령, 비상대비물자 준비·사용요령, 부상자 응급조치, 인명·시설 피해복구 등 비상사태에 효율적으로 대비·대응하기 위한 계획 등 수립
  - 민방공 대피계획 수립, 공공용 대피시설 지정(지자체 협조)
- (비상조직) 전시·비상 시 대응을 위해 비상조직체계 구축을 통해 부서·개인별 임무·역할의 명확한 규정·부여 및 신속·정확한 의사결정과 상황통제·관리
  - 합동상황실 구성·준비(비상연락망, 전화·팩스, 비상전력 등 점검)
- (교육·훈련) 비상대비업무담당자, 필수·핵심요원 등에 대한 주기적인 비상대비 교육과 재난대비훈련·민방위 훈련 등과 연계하여 사태·상황별 정기적인 훈련 실시

### 1. 대학보험(공제) 가입 총괄현황

구분	대인(학교구성원)	대물(교육시설)
대학교	한국교육시설안전원	한국교육시설안전원
연구실	한국교육시설안전원	한국교육시설안전원

### 2. 대학배상책임보험(공제)

#### 민법 & 학교안전법

##### 민법

제750조(불법행위의 내용)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 학교안전법

제29조(공제중앙회의 사업) ① 공제중앙회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 5의2.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 대한 안전사고보상공제 사업

##### ※ (관련 규정) 보험업 감독규정

☞ 제1-2조의2(보험계약 및 보험종목의 구분기준) 영 제1조의2제5항에서 "보험계약의 구체적 구분기준" 및 영 제8조제2항에서 "보험종목의 구체적 구분기준"이란 별표1에 따른 구분기준을 말한다.

#### □ 가입현황

(단위 : 천원)

기준 연도	보험(공제) 상품명	시작일 종료일	건물 보험료 (A)	건물 면적 (B)	연간 총보험료 (C)	보험(공제)청구				비고
						신체		재물		
						건수	금액	건수	금액	
2022	업그레이드 대학 종합보험(DB손해보험)	2022-02-26 2023-02-26		3,300	14,996	5	6,491	-	-	
2023	업그레이드 대학 종합보험(DB손해보험)	2023-02-26 2024-02-26		3,300	14,996	-	-	-	-	
2024	업그레이드 대학 종합보험(DB손해보험)	2024-02-26 2025-02-26		3,300	14,996	-	-	-	-	

#### □ 보상한도

담보대상	보상구분	보상한도액(천원)		비고
		1인당	1사고당	
배상책임 (학교시설)	대인	100,000	2,000,000	자기부담금 10만원
	대물	-	100,000	자기부담금 10만원
치료비	치료비	5,000	5,000	
	신입생 치료비	5,000	5,000	
교직원배상책임	대인	100,000	2,000,000	자기부담금 10만원
	대물	-	100,000	자기부담금 10만원

### 3. 교육시설안전보험(공제)

#### 화재로 인한 재해보상과 보험가입에 관한 법률

**제4조(특수건물 소유자의 손해배상책임)** ① 특수건물의 소유자는 그 특수건물의 화재로 인하여 다른 사람이 사망하거나 부상을 입었을 때 또는 다른 사람의 재물에 손해가 발생한 때에는 과실이 없는 경우에도 제8조제1항제2호에 따른 보험금액의 범위에서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이 경우 「실화책임에 관한 법률」에도 불구하고 특수건물의 소유자에게 경과실(輕過失)이 있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제5조(보험 가입의 의무)** ① 특수건물의 소유자는 그 특수건물의 화재로 인한 해당 건물의 손해를 보상받고 제4조제1항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을 이행하기 위하여 그 특수건물에 대하여 손해보험회사가 운영하는 특약부화재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

**※ (관련 기준) 교육시설안전원 교육시설공제 공제급여 기준**

[공제급여 대상] 화재(벽락 포함)·폭발·붕괴·태풍·홍수·호우·강풍·풍랑·해일·대설·한파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사고로 발생한 공제가입 목적물의 손해 또는 제3자의 법률상 배상책임(대인·대물) 등

#### □ 가입현황

(단위 : 천원)

기준 연도	보험(공제) 상품명	시작일 종료일	건물 보험료 (A)	건물 면적 (B)	연간 총보험료 (C)	보험(공제)청구				비고
						신체		재물		
						건수	금액	건수	금액	
2022	교육연구시설재난공제 (화재보험)	2022-01-01 2022-12-31	6,962	53,558	7,373	0	-	0	-	
2023	교육연구시설재난공제 (화재보험)	2023-01-01 2023-12-31	8,041	53,613	8,452	0	-	0	-	
2024	교육연구시설재난공제 (화재보험)	2024-01-01 2024-12-31	8,041	53,613	8,452	0	-	0	-	

#### □ 보상한도

담보대상			보상한도/자기부담금(천원)		비고
			1인당	1사고당	
건물				79,317,648	53,558m <sup>2</sup>
부속물					
배상책임	화재 (법정금액)	대인	150,000		
		대물		1,000,000	
	시설소유 (관리자)	대인	300,000	300,000	
		대물		1,000,000	

## 4. 연구실안전보험(공제)

###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

제26조(보험가입 등) ① 연구주체의 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연구활동종사자의 상해·사망에 대비하여 연구활동종사자를 피보험자 및 수익자로 하는 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

#### □ 가입현황

(단위 : 천원)

기준 연도	보험(공제) 상품명	시작일 종료일	건물 보험료 (A)	건물 면적 (B)	연간 총보험료 (C)	보험(공제)청구				비고
						신체		재물		
						건수	금액	건수	금액	
2022	연구실 안전공제	2022-04-06 2023-04-05		2,093	2,394	0	-	0	-	시용합 학과추가
2023	연구실 안전공제	2023-04-06 2024-04-05		2,093	2,394	0	-	0	-	

#### □ 보상한도

담보대상	보상한도/자기부담금(천원)		비고
	1인당	1사고당	
유족급여	200,000		
장해급여	200,000		1인당 2억원 한도, 후유장해 등급별 정액 보상
요양급여	2,000,000		
장의비	10,000		
입원급여	50		1일당 5만원 보상, 3일초과 30일 한도내
수업료 손실 지원금			

## 1. 재난안전훈련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

제43조의14(재난대비훈련 등) ① 행정안전부장관, 중앙행정기관의 장, 시·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 및 긴급구조기관의 장(이하 "훈련주관기관의 장"이라 한다)은 법 제35조제1항에 따라 관계 기관과 합동으로 참여하는 재난대비훈련을 각각 소관 분야별로 주관하여 연 1회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

## &lt;담당부서 및 담당자&gt;

구분	담당 부서	직책	성명	연락처	비고
팀장	시설관리팀, 총무팀	팀장	강경준	062-950-3515, kjkang@kwu.ac.kr	주관부서
팀원	시설관리팀	팀원	김중화	062-950-3517, kinnal@kwu.ac.kr	
팀원	"	팀원	최영석	062-950-3515, yeongs.choi@kwu.ac.kr	
팀원	"	팀원	오세희	062-950-3950, osh0408@kwu.ac.kr	
팀원	총무팀	팀원	김호연	062-950-3512, hoykim@kwu.ac.kr	협조부서

## □ 2023년 교육·훈련 결과

## ○ 추진개요

구분	교육일	교육시간	인원
학생·교직원	2023.03.30.	30분	810
학생·교직원	2023.10.19.	30분	807

## ○ 추진내용

구분	추진내용
기숙사 소방교육 및 화재 대피훈련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기숙사 소방교육 및 화재 대피훈련(광산소방서 합동)</li> <li>▪ 온라인 소방교육 실시(미참여 인원 별도 유입물 교육)</li> <li>▪ 기숙사생 및 관련 교직원 소방교육</li> <li>- 소화기 및 소화전 작동법, 피난요령, 화재대피 등</li> </ul>

## □ 2024년 교육·훈련 계획

## ○ 추진개요

구분	교육일	교육시간	인원
학생·교직원	2024.03월 중	30분	794
학생·교직원	2024.09월 중	30분	794

## ○ 추진내용

구분	추진내용
기숙사 소방교육 및 화재 대피훈련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기숙사 소방교육 및 화재 대피훈련(광산소방서 합동)</li> <li>▪ 기숙사생 및 관련 교직원 소방교육</li> <li>- 소화기 및 소화전 작동법, 피난요령, 화재대피 등</li> </ul>

## 2. 대학 안전사고 예방 교육

### 국민 안전교육 진흥 기본법

제10조(학교 등에서의 안전교육) ①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에 대한 교육을 관장하는 기관의 장은 해당 교육대상자에 대하여 안전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4.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의 학생

#### <담당부서 및 담당자>

구 분	담당 부서	직책	성 명	연락처	비고
주무팀장	학생지원팀	주무팀장	노상석	062-950-3611, ssno@kwu.ac.kr	주관부서
팀원	"	팀원	김종성	062-950-3590, jskim@kwu.ac.kr	
팀원	"	팀원	문예선	062-950-3813, azsx8465@kwu.ac.kr	
팀장	시설관리팀	팀장	강경준	062-950-3515, kjkang@kwu.ac.kr	협조부서
팀원	"	팀원	김중화	062-950-3517, kinnal@kwu.ac.kr	
팀원	"	팀원	최영석	062-950-3516, yeongs.choi@kwu.ac.kr	
팀원	"	팀원	오세희	062-950-3950, osh0408@kwu.ac.kr	

### □ 2023년 교육·훈련 결과

#### ○ 추진개요

구분	교육일	교육시간	인원
교직원, 공사업체	착공 전	10분	공사 관계인원
시설관리직원	태풍·한파 예보 시	10분	관리직원

#### ○ 추진내용

구분	추진내용
시설공사 안전교육	▪ 대학 내 시설 이동 인원, 사용자, 공사 안전 반영사항 사전 교육
재난 안전교육	▪ 재난 발생 유형별 대학 시설물 안전관리 교육

### □ 2024년 교육·훈련 계획

#### ○ 추진개요

구분	교육일	교육시간	인원
교직원, 공사업체	착공 전	10분	공사 관계인원
시설관리직원	태풍·한파 예보 시	10분	관리직원

#### ○ 추진내용

구분	추진내용
시설공사 안전교육	▪ 대학 내 시설 이동 인원, 사용자, 공사 안전 반영사항 사전 교육
재난 안전교육	▪ 재난 발생 유형별 대학 시설물 안전관리 교육

### 3. 대학 종사자 안전보건교육

#### 산업안전보건법

제15조(안전보건관리책임자) ① 사업주는 사업장을 실질적으로 총괄하여 관리하는 사람에게 해당 사업장의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총괄하여 관리하도록 하여야 한다.

3. 제29조에 따른 안전보건교육에 관한 사항

#### <담당부서 및 담당자>

구 분	담당 부서	직책	성 명	연락처	비고
팀장	시설관리팀, 총무팀	팀장	강경준	062-950-3506, kjkang@kwu.ac.kr	주관부서
팀원	총무팀	팀원	김호연	062-950-3512, hoykim@kwu.ac.kr	
팀원	시설관리팀	팀원	김중화	062-950-3517, kinnal@kwu.ac.kr	협조부서
팀원	"	팀원	최영석	062-950-3515, yeongs.choi@kwu.ac.kr	
팀원	"	팀원	오세희	062-950-3950, osh0408@kwu.ac.kr	

#### 2023년 교육·훈련 결과

##### ○ 추진개요

구분	교육일	교육시간	인원
교직원 (현업근로자)	상반기	2시간	3명
	하반기	2시간	3명

##### ○ 추진내용

구분	추진내용
교직원 안전보건교육	▪ 산업안전과 관련한 안전보건교육 추진
현업근로자 안전보건교육	▪ 중대재해처벌법 관련 의무이행 사항 확인 점검 (청소, 경비, 식당)

#### 2024년 교육·훈련 계획

##### ○ 추진개요

구분	교육일	교육시간	인원
교직원 (현업근로자)	상반기	2시간	3명
	하반기	2시간	3명

##### ○ 추진내용

구분	추진내용
교직원 안전보건교육	▪ 산업안전과 관련한 안전보건교육 추진
현업근로자 안전보건교육	▪ 중대재해처벌법 관련 의무이행 사항 확인 점검 (청소, 경비, 식당)

## 4. 연구실 안전교육

###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

- 제20조(교육·훈련)** ① 연구주체의 장은 연구실의 안전관리에 관한 정보를 연구활동종사자에게 제공하여야 한다.
- ② 연구주체의 장은 연구활동종사자에 대하여 연구실사고 예방 및 대응에 필요한 교육·훈련을 실시하여야 한다.
- ③ 제10조제1항·제2항에 따라 지정된 연구실안전환경관리자는 연구실 안전에 관한 전문교육을 받아야 한다.
- ④ 연구주체의 장은 제10조제1항·제2항에 따라 지정된 연구실안전환경관리자가 제3항에 따른 전문교육을 이수하도록 하여야 한다.
- ⑤ 제2항에 따른 교육·훈련의 내용과 방법, 교육·훈련 담당자의 요건 및 제3항에 따른 전문교육의 세부내용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담당부서 및 담당자>

구 분	담당 부서	직책	성 명	연락처	비고
팀장	시설관리팀	팀장	강경준	062-950-3506, kjkang@kwu.ac.kr	주관부서
팀원	"	팀원	최영석	062-950-3515, yeongs.choi@kwu.ac.kr	
팀원	"	팀원	오세희	062-950-3950, osh0408@kwu.ac.kr	
팀장	학사운영팀	팀장	정혜선	062-950-3530, hsjung@kwu.ac.kr	협조부서
팀원	"	팀원	허주희	062-950-3519, juhi@kwu.ac.kr	

#### □ 2023년 교육·훈련 결과

##### ○ 추진개요

구 분	과정	횟수	인원
연구활동종사자 교육	상반기 정기교육	1	1482
	상반기 신규교육	1	525
	하반기 정기교육	1	1786
	하반기 신규교육	1	49
방사선안전 교육	방사선안전관리자 교육	1	1
	방사선작업종사자 교육	1	4
	수시출입자 교육	1	27

##### ○ 추진내용

구분	추진내용
연구활동종사자 교육	▪ 신규 연구활동종사자, 정기 연구활동종사자, 연구실책임자, 연구실안전환경관리자 교육 등
방사선안전 교육	▪ 방사선실·습실 수시출입자, 방사선작업종사자, 방사선안전관리자 교육 등

□ 2024년 교육·훈련 계획

○ 추진개요

구분	과정	횟수	인원
연구활동종사자 교육	상반기 정기교육	1	추후확정
	상반기 신규교육	1	
	하반기 정기교육	1	
	하반기 신규교육	1	
방사선안전 교육	방사선안전관리자 교육	1	추후확정
	방사선작업종사자 교육	1	
	수시출입자 교육	1	

○ 추진내용

구분	추진내용
연구활동종사자 교육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신규 연구활동종사자, 정기 연구활동종사자, 연구실책임자, 연구실안전환경관리자 교육 등</li> </ul>
방사선안전 교육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방사선실습실 수시출입자, 방사선작업종사자, 방사선안전관리자 교육 등</li> </ul>



## 6. 성범죄 예방교육

### 성폭력방지법 등

#### 성폭력방지법

**제5조(성폭력 예방교육 등)** ①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의 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성교육 및 성폭력 예방교육 실시, 기관 내 피해자 보호와 피해 예방을 위한 자체 예방지침 마련, 사건발생 시 재발방지대책 수립·시행 등 필요한 조치를 하고, 그 결과를 여성가족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가정폭력방지법

**제4조의3(가정폭력 예방교육의 실시)** ①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및 「초·중등교육법」에 따른 각급 학교의 장,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단체의 장은 가정폭력의 예방과 방지를 위하여 필요한 교육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여성가족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성매매피해자보호법

**제5조(성매매 예방교육)** ①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초·중·고등학교,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단체(이하 "국가기관등"이라 한다)의 장은 성에 대한 건전한 가치관 함양과 성매매 방지 및 인권보호를 위하여 성매매 예방교육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여성가족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양성평등기본법

**제31조(성희롱 예방교육 등 방지조치)** ① 국가기관등의 장과 사용자는 성희롱을 방지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국가기관등과 사업장 등에 소속된 사람(해당 국가기관등의 장과 사용자를 포함한다)을 대상으로 성희롱 예방교육의 실시, 자체 예방지침의 마련, 성희롱 사건이 발생한 경우 재발방지대책의 수립·시행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고, 국가기관등의 장은 그 조치 결과를 여성가족부장관 및 주무부처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담당부서 및 담당자>

구분	담당 부서	직책	성명	연락처	비고
센터장	대학인권센터	센터장	곽경화	062-950-3755, greenkh@kwu.ac.kr	주관부서
주무팀장	"	주무팀장	노상석	062-950-3611, ssno@kwu.ac.kr	
팀원	"	팀원	이현욱	062-950-3857, soccerworld@kwu.ac.kr	
팀장	총무팀	팀장	강경준	062-950-3506, kjkang@kwu.ac.kr	협조부서
팀원	"	팀원	김호연	062-950-3512, hoykim@kwu.ac.kr	

### □ 2023년 교육·훈련 결과

#### ○ 추진개요

구분	교육일	교육시간	인원
학생(신입생)	2023.03.06.~2023.05.19.	2	성폭력예방 652
			가정폭력예방 660
학생(재학생)	2023.03.06.~2023.05.19.	2	성폭력예방 2,479
			가정폭력예방 2,522
	2023.10.04.~2023.10.31.	2	성폭력예방 26
			가정폭력예방 590
학생(교직원과정)	2022.10.04.~2024.01.31.	2	325
교직원(성희롱 예방교육)	2023.08.08.~2024.02.29.	1	302
교직원(성폭력 예방교육)		1	309
교직원(성매매 예방교육)		1	310
교직원(가정폭력 예방교육)		1	315

○ 추진내용

구분	추진내용
신규교육훈련	▪ 양성평등, 성인지 교육

□ 2024년 교육·훈련 계획

○ 추진개요

구분	과정	횟수	인원
학생(재학생)	성폭력 예방교육	2	추후확정
	가정폭력 예방교육		
학생(교직과정)	성폭력 예방교육	2	
	가정폭력 예방교육		
교직원	성희롱 예방교육	1	
	성폭력 예방교육	1	
	성매매 예방교육	1	
	가정폭력 예방교육	1	

○ 추진내용

구분	추진내용
신규교육훈련	▪ 양성평등, 성인지 교육

## 7. 비상대비 교육·훈련

### 비상대비자원 관리법 시행령

- 제20조의4(비상대비교육 계획 수립 및 실시) ① 행정안전부장관은 법 제13조의5에 따라 매년 비상대비교육의 수요를 조사하고, 그 결과를 기초로 비상대비교육 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 ② 행정안전부장관은 비상대비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의 장 또는 법 제11조제1항에 따라 지정된 업체의 장에게 제1항에 따른 비상대비교육 계획에 따라 비상대비교육을 실시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 <담당부서 및 담당자>

구 분	담당 부서	직책	성 명	연락처	비고
팀장	시설관리팀, 총무팀	팀장	강경준	062-950-3506, kjkang@kwu.ac.kr	주관부서
팀원	총무팀	팀원	김호연	062-950-3512, hoykim@kwu.ac.kr	
팀원	시설관리팀	팀원	김중화	062-950-3517, kinnal@kwu.ac.kr	협조부서
팀원	"	팀원	최영석	062-950-3515, yeongs.choi@kwu.ac.kr	
팀원	"	팀원	오세희	062-950-3950, osh0408@kwu.ac.kr	

### □ 2023년 교육·훈련 결과

#### ○ 추진개요

구분	교육일	교육시간	인원
교직원	2023.04.26.	1시간	19

#### ○ 추진내용

구분	추진내용
민방위 교육	▪ 비상사태, 국가적 재난 대처를 위한 대원의 임무와 역할수행

### □ 2024년 교육·훈련 계획

#### ○ 추진개요

구분	과정	횟수	인원
교직원	상반기	1	20
	하반기	1	20

#### ○ 추진내용

구분	추진내용
민방위 교육	▪ 비상사태, 국가적 재난 대처를 위한 대원의 임무와 역할수행

### 1. 대학 캠퍼스 지원기관 협의체 구성 및 운영

- 대학교 캠퍼스 내외 안전사고 예방 및 대책을 위해 지자체 재난안전 부서, 소방서, 경찰서, 병원 등 유관기관과 재난전문가(교수, 박사 등),외부 이해관계자들이 참여하는 대학 캠퍼스 지원기관 협의체 구성 및 운영
- 캠퍼스 내외 안전사고 예방에 관한 계획, 대학 학교안전 관련 주요정책, 유관기관 협업과제 발굴 등 안전 및 보건의 확보 및 개선에 관한 의견 청취(년 2회 이상)

### 2. 사고 유형별 유관기관 네트워크 구축 방법

#### □ 재난/안전사고/감염병 확산

기 관 명	상 황 실	비 고
	전 화 번 호	
광주광역시청	062-613-2119	재난안전상황실
광산구청	062-960-3975	시민안전과
광산경찰서	062-602-3328	종합상황팀
광산소방서	062-613-8863	재난대응과
대한적십자사	062-573-0541	긴급생계대책
세제지원(세무서)	062-605-0200	국세, 지방세 지원
교육시설재난공제회	062-611-9892	화재보험
한국전기안전공사	062-511-9811	광주전남지역본부
한국가스안전공사	062-383-0019	광주전남지역본부
한국전력공사	062-260-5526	광주전남본부
하남성심병원	062-958-1250	응급센터
광산구보건소	062-960-8733, 8771	선별진료소

#### □ 범죄

기 관 명	상 황 실	비 고
	전 화 번 호	
광주 지방경찰청	062-609-2139	종합상황실
광주 광산경찰서	062-602-3328	종합상황팀
광주해바라기센터	062-225-3117	원스톱지원센터

□ 산업재해 및 중대재해

기 관 명	상 황 실	비 고
	전 화 번 호	
광주광역시청	062-613-4940	시민안전실
광산구청	062-960-3732	시민안전과
광산경찰서	062-602-3328	종합상황팀
광산소방서	062-606-4634	구조대
교육시설재난공제회	062-611-9892	화재보험
한국전기안전공사	062-511-9811	광주전남지역본부
한국가스안전공사	062-383-0019	광주전남지역본부
한국전력공사	062-260-5526	광주전남본부
고용노동부	062-975-6394	산재예방지도과
하남성심병원	062-958-1250	응급센터
광산구보건소	062-960-8733, 8771	보건행정

□ 비상사태

기 관 명	상 황 실	비 고
	전 화 번 호	
광산구청	062-960-8661	종합상황실
광산경찰서	062-602-3328	종합상황팀
광산소방서	062-613-8863	재난대응과
육군제31사단	062-260-6401	군수처
공군제1전투비행단	062-940-4121	기지작전과
국가정보원	111	통합

## 1. 역할과 임무

- 대학안전관리계획 작성 부서에서는 계획의 수립·시행, 이행점검, 대책수립 수행
- 위험별 상황관리전담 부서에서는 지휘부(총괄 담당, 상황 총괄), 실무반(상황 대응, 사고 수습, 당직), 협조부서(언론 대응, 예산 협력, 유관기관 협력) 등으로 구분하여 위험상황 대응 및 관리 수행

## 2. 관계 법령 등 연계

- 관련 법령, 재난안전관리 규정, 및 위기대응 표준·실무·행동매뉴얼 등을 기반으로 대학안전관리계획 수립 필요
  - 관계 법령·규정·매뉴얼 개정 시 대학안전관리계획 보완 필요
- 시·도 및 시·군·구 등 유관기관 안전관리계획과 연계·협조하여 대학안전관리 집행계획 및 세부집행계획 수립 필요

## 3. 대학별 안전관리 규정 마련·운영

- 대학안전관리계획의 수립·시행에 필요한 대학별 자체 '안전관리 규정' 마련·운영
  - 대학안전관리의 구체적 적용 대상 및 범위 설정
  - 안전교육 실시, 안전대책의 점검·확인 등 학교장의 책무 규정
  - 대학안전관리 위험성평가 대상 및 방법·절차 규정
  - 대학안전사고 예방·조사 위원회 구성·운영관리
  - 대학안전관리 조직 구성·운영관리
  - 안전관리 협의체 구성·운영관리 등

# 붙임1

## 위험요인별 담당부서 및 담당자 현황(총괄)

위험유형	구분	담당 부서	직책	성 명	연락처	비고
1. 재난	① 자연재난	팀장	시설관리팀	팀장	강경준 062-950-3506, kjkang@kwu.ac.kr	주관부서
		팀원	시설관리팀	팀원	김중화 062-950-3517, kinnal@kwu.ac.kr	
		팀원	"	팀원	최영석 062-950-3515, yeongs.choi@kwu.ac.kr	
		팀원	총무팀	팀원	김호연 062-950-3512, hoykim@kwu.ac.kr	
	② 사회재난	팀장	시설관리팀	팀장	강경준 062-950-3506, kjkang@kwu.ac.kr	주관부서
		팀원	시설관리팀	팀원	김중화 062-950-3517, kinnal@kwu.ac.kr	
		팀원	"	팀원	최영석 062-950-3515, yeongs.choi@kwu.ac.kr	
		팀원	총무팀	팀원	김호연 062-950-3506, kjkang@kwu.ac.kr	
2. 안전사고	① 대학안전사고	주무팀장	학생지원팀	주무팀장	노상석 062-950-3611, ssno@kwu.ac.kr	주관부서
		팀원	"	팀원	김종성 062-950-3590, jskim@kwu.ac.kr	
		팀원	"	팀원	문예선 062-950-3813, azsx8465@kwu.ac.kr	
		팀장	시설관리팀 총무팀	팀장	강경준 062-950-3506, kjkang@kwu.ac.kr	
		팀원	시설관리팀	팀원	최영석 062-950-3515, yeongs.choi@kwu.ac.kr	
		팀원	"	팀원	오세희 062-950-3950, osh0408@kwu.ac.kr	
	② 교육시설사고	팀장	시설관리팀	팀장	강경준 062-950-3506, kjkang@kwu.ac.kr	주관부서
		팀원	시설관리팀	팀원	김중화 062-950-3517, kinnal@kwu.ac.kr	
		팀원	"	팀원	최영석 062-950-3515, yeongs.choi@kwu.ac.kr	
		팀원	총무팀	팀원	김호연 062-950-3512, hoykim@kwu.ac.kr	
	③ 연구실사고	팀장	시설관리팀	팀장	강경준 062-950-3506, kjkang@kwu.ac.kr	주관부서
		팀원	"	팀원	최영석 062-950-3515, yeongs.choi@kwu.ac.kr	
		팀원	"	팀원	오세희 062-950-3950, osh0408@kwu.ac.kr	
		팀장	학사운영팀	팀장	정혜선 062-950-3530, hsjung@kwu.ac.kr	
	팀원	"	팀원	허주희 062-950-3519, juhi@kwu.ac.kr	협조부서	
	3. 감염병 확산	① 코로나-19	주무팀장	학생지원팀	주무팀장	노상석 062-950-3611, ssno@kwu.ac.kr
팀원			"	팀원	김종성 062-950-3590, jskim@kwu.ac.kr	
팀원			"	팀원	문예선 062-950-3813, azsx8465@kwu.ac.kr	
팀장			기획전략팀	팀장	이지현 062-950-3533, jhlee@kwu.ac.kr	
팀원			"	팀원	조은희 062-950-3539, eunhee@kwu.ac.kr	
팀장			학사운영팀	팀장	정혜선 062-950-3530, hsjung@kwu.ac.kr	
팀원			"	팀원	허주희 062-950-3519, juhi@kwu.ac.kr	
팀장			시설관리팀 총무팀	팀장	강경준 062-950-3506, kjkang@kwu.ac.kr	
팀원			총무팀	팀원	김호연 062-950-3512, hoykim@kwu.ac.kr	
팀원			시설관리팀	팀원	김중화 062-950-3517, kinnal@kwu.ac.kr	
팀원	"	팀원	최영석 062-950-3515 yeongs.choi@kwu.ac.kr	협조부서		

위험유형	구분	담당 부서	직책	성 명	연락처	비고	
4. 범죄	① 일반 범죄	팀장	총무팀	팀장	강경준	062-950-3506, kjkang@kwu.ac.kr	주관부서
		팀원	"	팀원	김호연	062-950-3512, hoykim@kwu.ac.kr	
		주무팀장	학생지원팀	주무팀장	노상석	062-950-3611, ssno@kwu.ac.kr	협조부서
		팀원	"	팀원	김종성	062-950-3590, jskim@kwu.ac.kr	
	② 성범죄	센터장	대학인권센터	센터장	곽경화	062-950-3685, greenkhs@kwu.ac.kr	주관부서
		주무팀장	"	주무팀장	노상석	062-950-3611, ssno@kwu.ac.kr	
		팀장	총무팀	팀장	강경준	062-950-3506, kjkang@kwu.ac.kr	협조부서
		팀원	"	팀원	김호연	062-950-3512, hoykim@kwu.ac.kr	
5. 산업 재해 및 중대 재해	① 산업 재해	팀장	시설관리팀 총무팀	팀장	강경준	062-950-3506, kjkang@kwu.ac.kr	주관부서
		팀원	총무팀	팀원	김호연	062-950-3512, hoykim@kwu.ac.kr	
		팀원	시설관리팀	팀원	김중화	062-950-3517, kinnal@kwu.ac.kr	협조부서
		팀원	"	팀원	최영석	062-950-3515, yeongs.choi@kwu.ac.kr	
		팀원	"	팀원	오세희	062-950-3950, osh0408@kwu.ac.kr	
	② 중대 재해	팀장	시설관리팀 총무팀	팀장	강경준	062-950-3506, kjkang@kwu.ac.kr	주관부서
		팀원	총무팀	팀원	김호연	062-950-3512, hoykim@kwu.ac.kr	
		팀원	시설관리팀	팀원	김중화	062-950-3517, kinnal@kwu.ac.kr	협조부서
		팀원	"	팀원	최영석	062-950-3515, yeongs.choi@kwu.ac.kr	
		팀원	"	팀원	오세희	062-950-3950, osh0408@kwu.ac.kr	
6. 기타	① 비상 사태	팀장	시설관리팀 총무팀	팀장	강경준	062-950-3506, kjkang@kwu.ac.kr	주관부서
		팀원	총무팀	팀원	김호연	062-950-3512, hoykim@kwu.ac.kr	
		팀원	시설관리팀	팀원	김중화	062-950-3517, kinnal@kwu.ac.kr	협조부서
		팀원	"	팀원	최영석	062-950-3515, yeongs.choi@kwu.ac.kr	
		팀원	"	팀원	오세희	062-950-3950, osh0408@kwu.ac.kr	

- 학생집단활동안전관리에 관한 규정
- 실험실안전관리규정
- CCTV설치운영규정

# 학생집단활동안전관리에 관한 규정

[제정 2018.12.1]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광주여자대학교(이하 “우리 대학교”라 한다.) 학과 및 학생 자치 기구의 교내·외 활동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각종 안전사고 및 인권 침해를 사전에 예방하고 사후 조치를 신속 정확하게 함으로써 학생의 안전과 건전한 대학 문화를 조성하기 위함이다.

제2조(정의와 적용범위)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와 적용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집단(단체)활동’이란 대학본부, 학과 연합, 학과(부), 각종 사업단, 학생 자치 기구 등이 주관하는 각종 행사(이하 “행사”라고 한다.)로써, 학생을 소집하여 일정한 행위를 하는 제반 활동(O·T, M·T, 환영회, 축제 등)을 말한다.
2. ‘인권 침해’란 신체적 가해, 문자·언어적 가해, 성적 가해 등의 행위로 인해 피해자의 법익이 침해되는 경우를 말하며, 구체적인 정의는 다음과 같다.
  - 가. ‘신체적 가해’는 일반 폭력, 음주 강요, 얼차려 등으로 상대방에게 신체적 피해를 가하는 행위를 말한다.
  - 나. ‘문자·언어적 가해’는 욕설, 인신공격, 신체·언어적 비하 발언 등으로 상대방에게 모욕감을 느끼게 하는 행위를 말한다.
  - 다. ‘성적 가해’는 원하지 않은 신체 접촉 또는 문자·언어적 방법 등으로 상대방에게 성적 수치심을 일으키게 하는 행위를 말한다.
3. ‘안전관리’는 사고 예방은 물론 사후 조치까지 포함하는 과정이며, 그 대상은 집단(단체)활동에 참여하는 학생은 물론 관련 시설 및 부대장비까지 포함한다.

제3조(주관부서) ① 학생 집단(단체)활동 시 사고 발생의 예방과 사후 조치에 관한 총괄 책임자는 학생처장으로 하고, 현장 책임자는 집단 활동을 주관하는 학생 대표와 현장 지도교수로 한다.

② 학생처장은 제 1항에서 규정한 예방 및 사후 조치와 관련하여 필요한 경우 특별대책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4조(예방활동) ① 학생처는 매년 1회 이상 학생자치기구 간부 등 행사 주관자를 대상으로 ‘집단(단체)활동 시 안전 확보에 필요한 사항’을 안내·교육 한다.

② 신입생에 대한 예방활동 오리엔테이션은 학생처 또는 다른 대학본부에서 주관하여 실시한다.

제5조(집단 활동 승인 절차) ① 행사 주관자는 별지 제 1호 서식 ‘행사 허가신청서’를 행사 7일 전까지 학생처에 제출하여 사전 승인을 득하여야 한다.

② 학생처장은 제 1항의 행사 계획이 우리 대학교 교육 목적에 부합하지 않거나 안전사고의 우려가 있다고 판단할 경우 그 계획을 불허할 수 있다.

③ 만약 대학의 승인을 득하지 않고 진행된 행사에서 사고가 발생한 경우, 관련 모든 책임은 행사 주관자에게 있는 것으로 한다.

④ 행사 주관자는 행사 종료 후 5일 이내에 별지 제 2호 서식 ‘행사 결과보고서’를 작성하여 학생처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6조(준수사항) ① 행사 주관자는 다음 각 호와 같은 사항을 확인하고 준수하여야 한다.

1. 집단 활동(단체 활동)에 대한 보험 가입 여부 및 보상 범위 확인
2. 참여 학생에 대한 사전 안전교육 실시
3. 행사(계약) 전(前) 현장 답사
4. 숙박시설(장소)의 안전 확인
5. 교통수단의 안전 확인

② 행사 주관자에 따른 현장지도·관리 책임자 지정은 다음 각 호에 따른다.

1. 대학본부에서 행사 주관 시 해당부서장은 동행 교·직원을 지정해야 한다.
2. 학부(과)에서 행사 주관 시 해당 학부(과) 학과장은 현장 지도 교수를 지정해야 한다.
3. 학생자치기구(총학생회, 동아리)에서 행사 주관 시 총학생회의 경우 학생처장이 현장 지도 교·직원을 지정하고, 동아리의 경우 해당 동아리 지도교수가 현장지도를 담당한다.
4. 그 외에 학생집단(단체)활동의 경우 ‘행사허가신청서’ 접수 시 학생처장이 현장지도 교·직원을 지정한다.

제7조(사후 조치) ① 행사에 따른 안전사고 및 인권 침해 발생 시 현장 책임지는 다음 각 호와 같이 조치해야 한다.

1. 사고 발생자에 대한 응급 처치와 병원 후송
2. 사고 현장에 대한 초동 및 발생 상황의 대학본부(해당 부서) 보고

② 제1항에서 규정한 보고를 접수한 주무부서 및 기타 대학본부는 사고 상황 및 조치 결과 확인, 사후 조치 계획 등을 엄정하게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제8조(준용) 이 규정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및 교육부에서 공시한 ‘대학생 집단연수 운영 안전 확보 매뉴얼’을 준용한다.

## 부 칙

① (시행일) 이 규정은 2018년 12월 1일부터 시행한다.

# 실험실안전관리규정

[제정 2012.5.1., 최종개정 2019.10.1]

## 제 1 장 총 칙

제1조 (목적) 이 규정은 광주여자대학교(이하 “우리 대학교” 라 한다)의 실험실 안전에 관한 기준을 확립하여 실험실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며, 사고에 대하여 업무처리의 기준을 정하게 함으로써 사용자의 인명을 보호하고 우리 대학교의 자산을 유지 보조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적용범위) ① 이 규정은 우리 대학교 모든 연구실 및 실험실에 대하여 적용한다. 다만, 실험실의 유형 및 규모는 「연구실 안전 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에 따른다.

② 이 규정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연구실 안전 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에 따른다.

제3조 (용어 정리)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실험실” 이라 함은 대학생 및 대학원생의 교육과정 이수에 필요한 각종 실험·실습실과 과학기술분야 연구개발 활동을 위하여 설치한 실험실의 시설, 장비, 사용재료, 물질과 이와 관련되는 부속시설 등을 말한다.
2. “연구활동종사자” 라 함은 실험실에 종사하는 실험실책임자, 대학생, 대학원생, 실험실안전관리담당자, 소속연구원(보조원포함) 등을 말한다.<개정 2015. 9.1.>
3. “실험실안전관리” 라 함은 실험실에서 발생할 수 있는 화재, 가스, 화학물질, 실험폐기물, 미생물 누출 및 안전관리에 관한 제반 사항으로 인명 및 재산상의 피해를 예방하는 점검, 보수, 정비 활동 등을 말한다.
4. “안전 점검” 이라 함은 경험과 기술을 갖춘 유자격자(기관)가 육안 또는 점검 기구등을 이용하여 검사를 실시함으로써 실험실에 잠재되어 있는 위험 요인을 조사하는 행위를 말한다.
5. “정밀안전진단” 이라 함은 실험실에서 발생할 수 있는 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잠재적 위험성의 발견과 그 개선 대책 수립을 목적으로 전문기관 또는 전담부서에서 실시하는 조사 평가를 말한다.
6. “연구실안전환경관리자” 라 함은 실험실 안전과 관련한 기술적인 사항에 대하여 총장을 보좌하고 연구실 안전관리담당자를 지도하는 자를 말한다. <신설 2015. 9.1.>
7. “실험실책임자” 라 함은 각 실험실에서 과학기술분야 연구개발활동 및 연구활동종사자를 직접 지도·관리·감독하는 자를 말한다. <신설 2015. 9.1.>
8. “실험실안전관리담당자” 라 함은 실험실에서 안전관리 및 사고예방 업무를 수행하는 자를 말한다. <신설 2015. 9.1.>
9. “연구주체의 장” 이라 함은 대학·연구기관 등의 대표자 또는 해당연구실의 소유자를 말한다. <신설 2016. 9.1.>
10. “연구실사고” 란 실험실에서 연구활동과 관련하여 연구활동종사자가 부상·질병·신체장해·사망 등 생명 및 신체상의 손해를 입거나 연구실의 시설·장비 등이 훼손되는 것을 말한다.<신설 2016. 9.1.>
11. “중대 연구실사고” 란 연구실사고 중 손해 또는 훼손의 정도가 심한 사고로서 미래 창조과학부령으로 정하는 사고를 말한다.<신설 2016. 9.1.>

12. “유해인자”란 화학적·물리적 위험요인 등 사고를 발생시킬 가능성이 있는 인자를 말한다.<신설 2016. 9.1.>
13. “사전유해인자위험분석”이란 연구개발활동 시작 전 유해인자를 미리 분석하는 것을 말한다.<신설 2016. 9.1.>

제4조 (대학의 책무) 우리 대학교는 실험실의 안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수행한다.

1.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시책의 수립 및 시행
2. 안전관리 부서의 지정 및 인력 배치
3. 안전관리위원회 등을 포함한 실험실 안전관리체계의 구축
4. 유형별 안전관리 표준화 모델의 개발
5. 안전교육 교재의 개발 및 보급
6. 「실험실 안전관리 규정」의 관리
7. 주기적인 안전점검의 실시 등 유지관리 사항의 점검
8. 안전교육의 계획 및 실시
9. 안전관리 예산의 확보
10. 재해에 대비한 보험가입
11. 안전 시설설비의 개·보수 요청에 대한 재정 지원
12. 기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정하는 사항 <개정 2013.7.1., 2019. 10.1.>

## 제 2 장 실험실 안전관리위원회

제5조 (위원회 설치) 안전 환경 조성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실험실 안전관리 위원회 (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구성 운영함을 원칙으로 한다.

제6조 (기능 및 의결) ① 위원회는 다음 사항의 기능을 수행 및 심의 한다.

1. 교내 안전에 관한 장·단기 정책수립
2. 안전관리규정의 작성 또는 변경
3. 안전 점검 계획의 수립, 시행 및 평가
4. 안전 교육에 관한 사항
5. 안전 프로그램 개발 및 평가에 관한 사항
6. 각종 유해 물질의 처리 대책
7. 위원회는 필요시 안전 점검반 또는 사고조사반을 편성 운영한다.
8. 사고발생시 사고대책위원회로 전환 운영한다.
9. 기타 보전 대책 및 안전 증진에 관한 주요사항

② 위원회는 위원장이 소집하고 재적 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최하며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7조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15인 이내로 구성함을 원칙으로 한다.

<개정 2015. 9.1., 2019. 10.1.>

② 위원장은 행정처장으로 한다. <개정 2015. 9.1.>

③ 위원은 연구실안전환경관리자와 다음 각 호의 사항 중에서 위원장이 지명하는 사람으로 한다. <신설 2015. 9.1.>

1. 실험실 책임자 <신설 2015. 9.1.>
2. 연구활동종사자 <신설 2015. 9.1.>

- ④ 실험실 안전관리위원회의 활동을 지원하고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실험실 안전관리위원회에 간사 1인을 두며, 간사는 시설관리팀 방사선안전관리자로 한다.<신설 2015. 9.1., 2019. 10.1.>

제8조 (임기) 위원회의 임기는 1년으로 하고, 결원으로 인하여 새로이 위촉하는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 임기로 한다.

제9조 (회의록 작성) 위원회는 회의록을 작성 비치하여야 하며, 위원회에서 심의한 중요 사항을 총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 제 3 장 조직과 직무 책임 및 안전관리 <개정 2015. 9.1.>

제10조 (조직) 우리 대학교의 효율적인 안전관리를 위하여 다음과 같은 안전관리 조직을 설치, 운영 한다.

1. 「실험실 책임자」는 실험·실습을 직접 지도·관리·감독하는 사람으로 한다.<개정 2015. 9.1.>
2. 「실험실 안전관리 담당자」는 실험실 책임자가 지명하는 사람으로 한다.<개정 2015. 9.1.>
3. <삭제 2015. 9.1.>
4. 「실험실 업무 총괄 부서」는 행정처로 한다. <개정 2015. 9.1.>
5. 「연구실안전환경관리자」는 연구실 안전 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조 (연구실안전환경관리자 지정 및 업무 등)이 정하는 유자격자로 하거나, 안전관리 전담부서에 관리자를 지정하여 임명할 수 있다. <개정 2015. 9.1.>

제11조 (실험실 책임자 업무 및 책임) <개정 2015. 9.1.>

- ① 실험실 내에서 이루어지는 교육 및 연구·개발 활동과 관련된 안전관리 전반에 책임을 진다. <개정 2016. 9.1.>
- ② 실험실 책임자는 해당 실습실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고 관련 사항을 점검·조치하여야 한다. <개정 2016. 9.1.>
  1. 시설물, 기기, 시약 및 기타 위험물 등의 취급, 유지관리, 폐기
  2. 위험기계, 시설물, 화학약품 등의 안전관리대상목록 작성·관리
  3. 안전관리에 필요한 각종 자료 및 기록의 정리·유지
  4. 일상점검 및 점검결과 기록·유지
  5. 연구활동종사자의 안전교육 이수 조치
  6. 유해물질을 사용하거나 보관중인 실험실 책임자는 물질명칭, 성분, 유해위험성, 누출사고 시 대처방법 등을 기재한 물질안전보건자료(MSDS)를 연구활동종사자가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자료를 비치하고 관련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7. 안전사고 예방 및 사고발생 시 관련기관에 연락 [별지서식1], 사고보고, 초기대응, 사고조사, 재발방지대책 수립하여 보고한다.
  8. 안전관리지침, 실험실안전수칙, 실험기기사용설명서, 비상시행동요령, 안전표지판, 안전관리책임자 등의 부착·관리
  9. 기타 실험실 안전관리에 관한 제반 사항
  10. 유해·위험물질을 취급하는 실험실책임자는 폭발, 화재 등 주요 실험실 사고를 효과적으로 예방하기 위하여 실험실에 시약장, 흡후드, 비상세안기, 비상샤워기, 가스누출

감지기, 환기장치, 소화설비, 멸균기 등 안전장비와 보안경, 절연장갑, 방진마스크, 안전화, 보호복, 안전면 등 개인보호구를 구비·활용하여야 한다.

③ 실험·실습 시작 전에 다음 각 사항이 포함된 사전유해인자위험분석을 실시하여 연구실 안전환경관리자에게 보고한다.

1. 해당 실험실의 안전 현황
2. 해당 실험실의 유해인자별 위험분석
3. 실험실안전계획 및 비상조치계획

④ 연구활동종사자를 대상으로 해당 실험실 사고 시 행동 요령 교육을 한다.

제12조 (실험실 안전관리 담당자 업무 및 책임) <개정 2015. 9.1.>

- ① 일일점검을 실시한다.
- ② 해당 실험실에 안전 지침서, 안전수칙, 실험실안전관리규정을 비치한다.
- ③ 실험실 책임자를 보좌하여 교육, 훈련 실시한다.
- ④ 해당 실험실에 안전 보호 장비를 비치한다.
- ⑤ 해당 실험실 부재중 실험에 대한 대비책 마련한다.
- ⑥ 실험실내 위험물 유해물 취급 관리한다.
- ⑦ 해당 실험실 안전사항을 연구실안전환경관리자에게 보고한다.

제13조 (연구실안전환경관리자 업무 및 책임) <개정 2015. 9.1.>

- ① 실험실의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의 실시계획 수립 및 실시
- ② 실험실 안전교육계획 수립 및 실시
- ③ 실험실 사고 발생 시 원인조사 및 재발방지를 위한 기술적 지도·조언
- ④ 실험실 안전환경 및 안전관리 현황에 관한 통계의 유지·관리
- ⑤ 「연구실 안전 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명령이나 안전관리규정을 위반한 연구 활동종사자에 대한 조치의 건의
- ⑥ 그 밖에 연구시설의 안전성 확보에 관한 사항

제14조 (연구활동종사자의 역할) ① 연구활동종사자는 다음 각 사항을 숙지하여 자신 및 주위의 안전을 도모하여야 한다. <개정 2015. 9.1.>

1. 안전교육의 이수
2. 실험실 안전수칙, 비상시 행동 요령 및 안전 규정을 준수
3. 안전에 관련된 우려가 있을 경우 즉시 보고 및 조치 강구
4. 사고나 상해 발생 시 즉시 보고

제15조 (실험실 업무 총괄 부서 책임 및 역할) ① 실험실 업무 총괄 부서는 연구실안전환경관리자를 지정하여 실험실 안전 및 유지관리 업무를 수행한다. <개정 2015. 9. 1>

② 실험실 업무 총괄 부서 및 안전환경관리자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개정 2015. 9.1.>

1. 실험실별로 위험 등급을 지정하여 관리
2. 학과 및 실험실의 안전 이행 실태 조사
3. 실험실 정기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4. 실험실 안전 표식의 설치 또는 부착 <개정 2015. 9.1.>
5. 화재 예방 및 소방 교육에 관한 사항
6. 실험실 폐액 수거 및 처리

7. 사고 조사 및 후속 대책 수립에 관한 사항
8. 보험관리 업무
9. 건강진단 업무
10. <신설 2013.7.1., 삭제 2015. 9.1.>
11. <신설 2013.7.1., 삭제 2015. 9.1.>
12. 실험실 안전관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 <신설 2013.7.1.>
13. <신설 2013.7.1., 삭제 2015. 9.1.>
14. 그 밖의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

제16조 (교무처의 책임 및 역할) <삭제 2015. 9.1.>

제17조 (위험등급의 지정) 실험실 업무 총괄 부서는 등록 실험실에 대한 위험등급의 지정을 실험실 책임자와 협의하여 실험실의 위험정도에 따라 다음과 같이 관리등급을 지정한다.<개정 2015. 9. 1>

- 1.A등급 : 가연성가스, 인화성시약, 유해화학물질, 다량의 폐액배출, 독극물, 생물 및 동물의 취급, 방사성동위원소, 위험성 높은 장비가 설치된 실험실 등
- 2.B등급 : 일반시약, 소규모 인화성 시약, 불연성가스, 소량의 폐수 발생 실험실 등
- 3.C등급 : 이화학실험을 수행하지 않는 전기, 설계, 컴퓨터관련 실험실 등

#### 제 4 장 정기 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개정 2015. 9.1.>

제18조 (정기점검 및 특별안전점검) ① 실험실 업무 총괄 부서는 실험·실습실에 대한 안전 점검을 다음 각 호에 따라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5. 9.1.>

1. 정기점검 : 매년 1회 이상 실시하여야 하며 일정 요건을 갖춘 전문기관으로 하여금 대행하게 할 수 있다. (단, 정밀 안전진단을 시행한 경우 이를 대체한다.)
2. 특별안전점검 : 치명적인 위험을 야기할 가능성이 있거나 재해예방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시행한다.

제19조 (정밀 안전진단의 실시 및 결과 보고) ① 실험실 업무 총괄 부서는 실험실의 재해 예방과 안전성 확보 등을 위하여 2년에 1회 이상 정밀 안전진단을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5. 9.1.>

- ② 유해, 위험 물질 및 시설·장비를 취급하는 등 유해 또는 위험한 작업을 필요로 하는 실험·실습실은 추가적으로 정밀안전진단을 실시할 수 있다.
- ③ 실험실 업무 총괄 부서는 정밀 안전진단을 일정 요건을 갖춘 전문기관으로 하여금 대행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5. 9.1.>
- ④ 정밀 안전진단을 실시할 경우 지체 없이 그 결과를 총장에게 보고한다.<개정 2015. 9. 1>
- ⑤ 제4항의 규정에 따라 제출받은 안전점검 및 정밀 안전진단 실시 결과에 관한 기록을 유지·관리 하여야 한다.

#### 제 5 장 안전사고 예방 및 대처 행동 요령

제20조 (안전사고 예방조치 등)<신설 2013.7.1.>

- ① 실험실안전관리담당자는 실험시설 등으로 인하여 안전사고가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을 때에는 지체없이 실험실책임자에게 보고하고 안전사고예방을 위한 조치를 하

여야 한다.<개정 2015. 9.1.>

- ② 위험물 보관 장소 및 위험을 수반하는 장비가 설치되어 있는 장소에는 출입을 제한하고 위험표지 등을 설치하여야 한다.
- ③ 화재나 폭발 등의 발생요인이 있는 실험실에는 경보장치, 소화기 등 안전 설비를 설치하여야 한다.
- ④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실험실 책임자는 안전사고예방을 위한 조치를 취한 후 결과를 연구실안전환경관리자에게 보고를 하여야 한다. <신설 2015. 9.1.>

제21조 (사고발생시 긴급대처방안과 행동요령) ① 실험실 내 화재, 폭발, 중독 등의 안전사고가 발생하여 연구활동종사자가 부상을 입었을 경우 다음 각 호의 절차를 따른다. <신설 2013.7. 1>

- 1. 현장 목격자는 사고 즉시 주변에 상황 전파
  - 2. 실험실안전관리담당자는 필요시 응급실 또는 119에 연락하며 가까운 병원으로 부상자를 이송시킨다. <개정 2015. 9.1.>
  - 3. 부상자 평가 후 응급처치 실시 및 치료를 한다. <개정 2015. 9.1.>
  - 4. 실험실안전관리담당자는 실험실책임자에게 이를 알린다. <신설 2015. 9.1.>
  - 5. 실험실책임자는 사고발생을 연구실안전환경관리자에게 보고한다. <신설 2015. 9.1.>
  - 6. 사고발생시 긴급대처 및 행동요령으로 자세한 사항은 [별표4]에 따른다. <신설 2019. 10.1.>
- ② 사고 발생 등에 따른 비상연락 및 응급처리 체계는 [별표2]와 같다. <신설 2019. 10. 1>
  - ③ 실험실책임자는 안전사고 발생시 [별표3] 실험·실습실 안전사고 흐름도에 따라 연구실 사고조사표 [별지서식 4]를 실험실 업무 총괄 부서에 제출하여야 한다. <신설 2019. 10.1.>

제22조 (사고조사의 실시 및 후속대책수립) <신설 2013.7.1.>

① 실험실에 사고가 발생한 경우 그 재발을 방지하기 위하여 연구실안전환경관리자는 사고원인을 조사한다. 단,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사고가 발생한 실험실에 대하여 관련 전문가에게 사고경위 및 사고원인 등을 조사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5. 9.1.>

② <삭제 2015. 9.1.>

③ 연구주체의장은 사고조사의 결과에 따라 공중의 안전을 위해 연구실의 사용제한 또는 철거 등 안전상의 조치를 취한다.

(단, 연구주체의장은 총장을 말한다.) <신설 2013.7.1., 2015. 9.1.>

④ 연구실안전환경관리자는 사고원인 파악 후 실험실 업무 총괄 부서장을 통하여 연구주체의장 및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이를 보고한다.<신설 2015. 9.1., 2019. 10.1.>

⑤ 연구실안전환경관리자는 사고 재발방지를 위하여 실험실책임자에게 기술적 지도 및 조언을 할 수 있다.<신설 2015. 9.1.>

## 제 6 장 안전 교육

제23조 (안전교육) ① 안전 교육의 대상은 실험실책임자, 대학생, 대학원생, 실험실안전관리담당자, 소속연구원 등 모든 실험실 이용자로 한다.<개정 2015. 9.1.>

② 안전 교육은 아래의 각 호와 같이 실시한다.

1. 정기 안전교육은 반기별 6시간이상 사이버교육으로 실시 <개정 2015. 9.1.>

2. 신규 안전교육은 2시간이상 집합교육으로 실시 <개정 2015. 9.1.>

가. 대상 : 새로운 실험 과정의 신설시, 연구소의 신설시, 교육 미 이수자(신입 대학생 및 대학원생, 연구원, 유해 물질 취급자 등)

나. 방법 : 사이버 안전 교육(홈페이지 개설 동영상 교육), 자료 및 유인물, 외부 온라인, 외부강사, 전문 교육기관 의뢰

3. 특별 교육은 외부의 전문기관에 의뢰하여 위탁 교육 실시

③ 실험실 자체 교육은 실험실책임자가 다음 각 호와 같이 실시한다. <개정 2015. 9.1.>

1. 실험실책임자는 학기 초에 자체적으로 안전 교육 실시 <개정 2015. 9.1.>

2. 실험 시작 전에 위험이 따르는 기기 조작 요령 및 안전 교육 실시 (위험시설, 기계, 가스, 약품 등)

3. 실험실별로 자체 수업 시에 안전에 관한 내용을 포함하여 교육 실시

④ 안전 교육 내용은 실험실 안전 수칙을 근거로 하고, 세부 교육내용은 별도로 교안을 작성하여 실시한다.

## 제 7 장 안전관리비 계상 및 보험 가입

제24조 (안전관리비 계상) ① 우리 대학교는 실험실 안전 관리에 필요한 비용을 매년 확보하여야 한다.

② 실험실에서 연구과제 수행 시 해당과제 인건비 총액의 2%범위 안에서 예산을 반영하여야 한다.

③ 안전관리비는 연구활동종사자에 대한 보험료, 교육훈련, 건강검진, 보호장비 구입, 안전설비 설치·유지 및 보수,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비, 연구실안전환경관리자에 대한 전문교육 등에 사용하여야 한다.<개정 2015. 9.1.>

제25조 (보험가입) ① 우리 대학교는 화재, 상해 등에 대비하여 연구 활동 종사자를 피보험자 및 수익자로 하는 보험에 가입하여야 하며, 사망시와 상해등급별 보상금액은 관련 법령에 따른다.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연구 활동 종사자에 대하여 보험에 가입하는 경우 보험 가입에 필요한 비용을 매년 예산에 반영하여야 한다.

③ 실험실 업무 총괄 부서는 인체에 치명적인 위험 물질 및 위해 생물 소재 등에 노출될 위험성이 있는 연구활동종사자에 대하여 정기적인 건강 검진을 실시하여야 한다.<개정 2015. 9.1.>

## 제 8 장 실험실 안전수칙 및 안전표식 <신설 2016. 9.1.>

제26조 (실험실 안전수칙) ① 연구활동종사자는 연구실 안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실험실에서는 금연, 정숙, 청결, 정리정돈을 유지하여야 한다.

2. 실험의 원리와 목적 그리고 실험과정을 완전히 이해하고 실험에 임한다.

3. 실험실에서는 침식을 할 수 없으며 난방용으로 전열 및 가스기구를 사용 할 수 없다.

4. 실험하는 동안 항상 실험복 및 안전보호장비를 착용하여야 한다.

5. 유해가스를 발생하는 화학약품을 사용할 때에는 반드시 HOOD를 사용한다.

6. 사용자는 실험중에 자리를 이탈해서는 안되며, 부득이 이탈할 경우에는 안전관리담당

자의 허락을 받아 안전수칙을 숙지시킨 대리인을 두어야 한다.

7. 실험실에 필요한 기기, 시약, 위험물등은 사용 전·후에 항상 점검하여 이상 유무를 확인하여야 한다.

제27조 (실험장치 사용취급 준수사항)①실험장치의 안전한 사용취급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연구활동종사자는 실험장치(고온·고압장치, 레이저, 자외선장치, 고압·독성가스, 특수장치 등)를 사용하기 전에 반드시 해당 실험실 책임자의 승인을 받고 사용하여야 한다.
2. 실험실책임자는 실험장치의 조작·운영, 사용절차, 방법 등에 관한 안전교육을 실시하고, 사용설명서를 상세하게 작성하여 연구활동종사자가 숙지할 수 있도록 게시하여야 한다.
3. 폭발물이나 스파크 등이 발생하는 위험한 실험 시에는 반드시 실험실 안전관리담당자의 입회하에 실험을 하여야 한다.
4. 실험실 안전관리담당자는 실험에 필요한 시설과 장비를 관련 기준 및 장비의 특성에 적합도록 유지관리 하여야 한다.

제28조 (시약, 위험물관리 및 처리 등) ① 실험실안전관리담당자는 시약 및 위험물 등을 지정된 장소에 안전하게 사용하도록 지도하여야 하며, 연구활동종사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모든 용기에는 내용물의 이름, 위험성, 사용방법, 구입날짜, 사용자 이름 등을 시약관리대장에 기재한다.
2. 시약 및 위험물 등은 실험실에 필요한 양만을 배분토록 하고 사용 후 잔여량은 회수하여 지정된 장소에 다시 보관한다.
3. 폐시약 및 시약병은 처리기준에 의거 지정한 장소에 배출한다.

제29조 (실험실 안전표식의 설치 또는 부착 등) ①실험실책임자는 실험실 내 위험요인이 존재하거나 사고 발생 가능성이 있는 지역, 시설 및 물질 등에 대하여 사고 방지 차원에서 금지, 주의, 경고, 비상 시 조치 지시나 안내사항 등을 안전 색, 그림, 기호, 글자 등을 포함한 안전표식 및 표지를 연구활동종사자가 쉽게 식별 할 수 있는 장소, 시설 또는 물체에 설치하거나 부착하고 유지관리 하여야 한다.

- ② 안전표식 및 표지 설치와 관련된 기준은 [별표5] 을 준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그 밖의 표식 및 표지의 설치와 관련하여서는 해당 실험실 책임자의 임의 결정 하에 제1항의 목적을 충족하는 범위 내에서 하도록 한다.

#### 부 칙

- ① (시행일) 이 규정은 2012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
- ② (경과조치) 2008년 4월1일 이후 이루어진 사항은 이 규정에 의한 것으로 본다.

#### 부 칙

- ① (시행일) 이 규정은 2013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① (시행일) 이 규정은 2015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① (시행일) 이 규정은 2016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① (시행일) 이 규정은 2019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

# CCTV설치운영규정

[제정 2008.9.1., 최종개정 2015.9.1.]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광주여자대학교 내·외에 학생안전, 도난, 범죄예방, 증거확보, 시설안전, 화재예방을 위하여 공익목적으로 CCTV를 설치하고, 정보주체의 인권이 침해되지 않도록 화상정보 보호에 대하여 준수해야 할 사항을 정하고 효율적인 관리·운영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5. 9.1.>

제2조(적용범위) CCTV의 설치·운영 및 이를 통해 수집·처리되는 화상정보의 보호에 관하여는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신설 2015. 9.1.>

제3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신설 2015. 9.1.>

- ① “CCTV”라 함은 일정한 공간에 설치된 촬영기기로 수집한 화상정보를 폐쇄적인 유·무선 전송로를 통하여 전송함으로써 특정인만이 수신할 수 있는 통신장비 일체로서 폐쇄회로텔레비전을 말한다.
- ② “화상정보”라 함은 CCTV로 촬영된 영상에 의하여 당해 개인의 동일성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정보를 말한다.
- ③ “정보주체”라 함은 화상정보에 의하여 식별되는 사람으로서, 당해 화상정보의 주체가 되는 자연인을 말한다.
- ④ “처리”라 함은 CCTV에 의하여 수집되는 화상정보를 입력·저장·편집·삭제 및 재생 그 밖에 이와 유사한 행위로서, 수집을 제외한 화상정보의 취급을 말한다.

제4조(책임자 지정) ① 총장은 CCTV에 수집된 개인화상정보에 대한 안전한 관리를 위해 총괄책임자와 운영책임자를 지정한다. <신설 2015. 9.1.>

② 총괄책임자와 운영책임자의 주요 역할은 다음과 같다. <신설 2015. 9.1.>

구 분	담당자	주요내용
총괄책임자	행정처장	CCTV 관련 설치·운영 업무 총괄
운영책임자	CCTV 설치·운영하는 부서의 장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CCTV 설치·운영규정 수립</li> <li>○ CCTV 관련 민원의 접수 및 처리</li> <li>○ 화상정보의 수집 등 운영실무</li> <li>○ CCTV 설치 및 유지 보수</li> </ul>

제5조(운영관리) ① CCTV 주 장치는 CCTV를 설치·운영하고자 하는 부서에 설치한다. <신설 2015. 9.1.>

② 운영책임자는 다음 각 호의 접근권한이 부여된 자 외에는 열람·재생을 불허하고, 열람·재생이 필요한 경우 신분확인 후 개인영상정보 관리대장 [별표 1]로 관리한다.<신설 2015. 9.1.>

- 1. 업무담당자
- 2. 운영책임자의 허락을 받은 자

③ CCTV에 의하여 수집·처리되는 화상정보로의 접근권한을 제2항의 각 호에 지정된 최소한의 인원으로 제한한다. <신설 2015. 9.1.>

- ④ 운영책임자는 CCTV의 정상작동 여부를 일정하게 점검하고 해당항목에 대한 기록 자료를 정확히 관리하여야 한다. <신설 2015. 9.1.>
- ⑤ 운영책임자는 화상정보에 대한 불법적 접근 및 변조·누출·훼손 등에 대비 하여 기술적·관리적 안전조치를 강구한다. <신설 2015. 9.1.>
- ⑥ 운영책임자는 화상정보에 대하여 접근권한을 부여받은 자로 하여금 정보주체의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교육을 실시한다. <신설 2015. 9.1.>

제6조(안내판의 설치 규격 및 장소) CCTV가 설치되어 있는 건물의 주 출입구에 CCTV의 설치 현황 및 화상정보의 수집에 대하여 인식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와 같이 안내판을 설치한다.

- ① 설치장소 : CCTV가 설치되어 있는 건물의 출입구 등 잘 보이는 곳 <개정 2015. 9.1.>
- ② 교육부 지침에 따른다.<개정 2015. 9.1.>
- ③ 기재내용 : 설치목적, 촬영범위, 촬영시간, 운영책임자 및 연락처 <개정 2015. 9.1.>

제7조(정보주체의 권리행사, 불복수단에 관한 내용·절차 및 방법 등) ① 정보주체는 운영책임자에 대하여 화상정보의 존재확인 및 열람·삭제를 요청할 수 있다.<개정 2015. 9.1.>

- ② 제1항의 요청에 대하여 관련 법령에 따라 지체 없이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개정 2015. 9.1.>
- ③ 제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거부할 수 있다. 이 경우 7일 이내에 거부사유를 정보주체에게 통지(정보통신망 포함)하여야 한다.

- 1. 범죄수사·공소유지·재판수행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
- 2. 특정 정보주체의 화상정보만을 삭제하는 것이 기술적으로 현저히 곤란한 경우
- 3. 제1항에 따른 요청에 필요한 조치를 취함으로써 타인의 사생활권이 침해될 우려가 큰 경우
- 4. 기타 열람 등의 요청을 거절할 만한 정당한 공익적 사유가 존재하는 경우

제8조(촬영시간, 보유기간, 보관·관리·삭제의 방법, 보관 장소 등) ① CCTV촬영시간은 24시간 365일 상시 녹화로 한다.

- ② 화상정보의 보유기간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통상 30일이내로 한다.

- 1. 범죄수사·공소유지·재판수행에 중대한 자료
- 2. 시설안전·화재예방·시설관리 등에 필요한 자료로 활용하기 위하여 운영책임자가 별도의 보유기간을 지정하여 보유하는 경우<개정 2015. 9.1.>

- ③ 화상정보의 보관·관리·삭제의 방법은 다음 각 호와 같다.

- 1. 제2항 각호의 1에 의한 자료의 보관은 CCTV를 설치·운영 하는 운영책임자가 지정하는 장소에 보관토록 하며, 자료 보유의 목적 및 사유가 소멸되었을 경우에는 비밀문서 파기 규정에 준용하여 지체 없이 삭제토록 한다.<개정 2015. 9.1.>
- 2. 기타 상시 녹화되는 화상정보는 운영책임자가 지정하는 장소에 설치된 자동녹화장비(DVR)의 메모리용량에 의해 자동 보관·삭제토록 한다.<개정 2015. 9.1.>

제9조(화상정보의 열람·재생의 장소, 출입통제현황) ① 화상정보의 열람 및 재생 장소는 CCTV를 설치·운영 하는 운영책임자가 지정한다.<개정 2015. 9.1.>

- ② 운영책임자는 화상정보 열람·재생 장소를 출입제한구역으로 지정하여야 하며, 화상정보 열람·재생에 대한 기록을 작성한다.<개정 2015. 9.1.>

③ 제2항의 규정과 별도로 외부인의 통제, 화재 및 방범의 목적을 위해서 CCTV가 설치되어 있는 건물 내·외 등에 설치된 CCTV의 화상정보는 운영책임자가 상시 감시(열람)할 수 있다.<개정 2015. 9.1.>

제10조(화상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열람·재생할 수 있는 사유) 정보주체의 화상정보는 설치목적 외의 용도로 활용되거나 접근권한을 부여받은 자 이외의 타인에게 열람·제공되어서는 아니 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개정 2015. 9.1.>

1. 정보주체의 동의가 있는 경우
2. 제7조 제1항에 의거 정보주체에게 열람·제공되는 경우<개정 2015. 9.1.>
3.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4. 신문·방송을 통한 언론보도의 목적을 위하여 필요한 때로서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는 형태로 제공하는 경우
5. 정보주체의 권익이 침해될 수 있는 위험이 명백하고 현존하는 때로서 정보주체의 동의를 얻지 못할 이유와 급박한 사유가 존재하는 경우
6. 범죄의 수사나 공소의 제기 및 유지에 필요한 경우
7. 법원의 재판업무수행에 의하여 필요한 경우

제11조(보칙) 이 규정에 정함이 없는 사항은 “개인정보보호법”, “개인정보보호를 위한 공공기관의 CCTV 설치·운영지침”의 취지에 반하지 않는 범위에서 CCTV를 설치·운영 하는 운영책임자의 지시에 따라 처리한다.<개정 2015. 9.1.>

제12조(열람청구 절차 및 방법) <삭제 2015. 9.1.>

#### 부 칙

(시행일) 이 규정은 공고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 부 칙

(시행일) 이 규정은 2015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